숫자로 완성한 강원도 여성의 삶 10년

## 수數 수遂한 010i기

숫자로 완성한 강원도 여성의 삶 10년

## 발간사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하여 도정 전반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도구이자 성과물인 강원성인지통계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지통계는 정책수립과 실행과정에서 도민의 절반을 구성하는 여성의 경험과 현실이 배제되거나 성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모든 통계자료는 성별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특정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었는지, 정책 결과가 여성과 남성간의 성별 격차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통계들은 성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여성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쉬움 속에서 강원도 여성의 이슈와 동향을 성별 통계를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리고자 본원에서는 2009년 11월부터 「강원성인지통계」를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하여매월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강원성인지통계는 강원도 내 여성들의 경제활동, 가족에 대한 가치관, 정치적 대표성, 안전과 재난, 인구변화, 건강, 일생활균형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뤄왔습니다. 각 주제별로 여성의 현황과 성별 격차의 원인 및 변화추이를 성별 통계를 활용해서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은 성별 통계의 유용성이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독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성인지통계는 사회적으로 성별 통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여성과 남성간의 불평등한 성별 격차가 개선되어 성평등한 강원도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계속 발행될 것입니다. 그동안 사랑과 관심으로 「강원성인지통계」를 구독해주신 도민 여러분들이 계셔서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 4.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

박 기념

## Contents



## 강원성인지통계 10년을 돌아보며 이



| 통계로 본 강원도 여성 현황 | 10 |
|-----------------|----|
| ■ 인구            | 12 |
| ■ 가족            | 16 |
| ■ 경제활동          | 18 |
| ■ 복지            | 20 |



| 초  | 근 4년의 강원성인지통계 20선                  | 22 |
|----|------------------------------------|----|
| 01 | 젠더 관점에서 본 감염병 재난상황과 대응과제           | 24 |
| 02 | 성별 임금격차, 어디까지 왔나                   | 27 |
| 03 | 노인의 경제현실, 일하고 싶은 노인인가, 일해야 하는 노인인가 | 30 |
| 04 | 여성공무원의 현황과 경력관리                    | 33 |
| 05 | 장애인 학대 피해 경험, 현실과 대처방안             | 36 |
| 06 | 돌봄일자리 = 여성일자리 = 저임금일자리?!           | 39 |
| 07 | 자연재해 위험의 성별 격차, 대응과 예방             | 43 |
| 08 | 한부모가구의 성별 주거실태                     | 48 |
| 09 | 젠더폭력 현황, 강원도는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인가        | 52 |
| 10 | 경력단절여성의 현황과 특성                     | 55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10년

# 수數. 수遂.한 OIOi기

숫자로 완성한 강원도 여성의 삶 10년

| 11 | 여성 비정규직의 규모와 일자리의 질            | 58 |
|----|--------------------------------|----|
| 12 | 노인 이동권의 성별 차이                  | 61 |
| 13 | 워킹맘 & 워킹대디의 일·가정 갈등경험          | 64 |
| 14 | 공평한 가사분담, 견해와 현실의 차이           | 67 |
| 15 | 지방선거 당선자 성별 현황과 강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 69 |
| 16 | 혼전동거 및 혼전출산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보수적   | 72 |
| 17 | 갈 길이 먼 남성의 부성권 확보              | 74 |
| 18 | 2015년 인구총조사로 본 강원도 인구와 여성가구 변화 | 78 |
| 19 | 주관적 계층의식 및 사회이동의 성별 인식 차이      | 83 |
| 20 | 늦어지는 강원 여성의 출산                 | 87 |

강원성인지통계 10년을 돌아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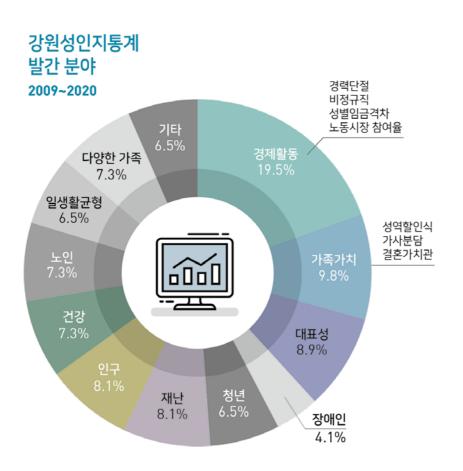
수數 수遂**한** 010i기

숫자로 완성한 강원도 여성의 삶 10년 GANGWONDO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 강원성인지통계 10년을 돌아보며

강원성인지통계는 2009년 11월 제1호로 시작으로 2020년 4월까지 제126호가 발간되었 다. 강원성인지통계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웹뉴스 형태로 이메일 발송 및 홈페이지에 게시 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강원성인지통계가 다뤄온 주제는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강원도 내 흡연, 자살, 건강검진 등 건강 관련 주제와 다양한 가족 구성, 가족 가치 및 성역할, 재난과 안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정치·사회적 대표성, 일·생활균형과 관련된 주제들이 주류를 이 루고 있으며, 그 외에 강원도 인구와 자원봉사, 정보력, 기부율, 교육 수준 등을 포괄하고 있다. 복지와 관련된 주제는 주로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노인, 장애인, 청년 계층을 중심으로 현 안들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가장 빈도가 많았던 주제는 여성경제활동으로 총24건(19.5%)이다. 경제활동은 여성들의 고용상태, 고용률, 고용형태, 임금 등 여성노동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노동시장 내 성별 격 차를 분석했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있지만, 여성을 기본적으로 양육자이자 부차적 노동자로 규정하는 틀 속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의 저임금, 돌봄 노동자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가구 구성과 가족 가치가 중요한 사회적 관 심사로 떠오르면서 가족 관련 주제가 총 21건(17.1%)을 차지했다. 핵가족 중심이었던 가구 구 성이 한부모 가구, 1인 가구, 결혼이민자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 구성의 변화와 함께 가족에 대한 정의, 가치관도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맞벌이 가구의 증가에 따른 부부간 가사분담이나 성역할의 변화도 더 디지만 대세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일·생활균형과 관련된 이슈도 8건(6.5%)으로, 생활시 간조사를 활용하여 성별에 따른 시간 사용의 차이를 살펴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여성의 정치·사회적 대표성과 참여(11건, 8.9%), 그리고 안전과 재난 관련 이슈가 10건(8.1%)이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분야의 참여가 양적 으로 확대됨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았으며, 성별에 따 라 안전에 대한 인식과 기후 변화의 영향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차이점에 주목하였 다.

현재 강원도에서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도내 인구의 변화와 현황을 살펴본 원고는 총 10건(8.1%)이었으며, 그 외 여성자원봉사활동과 정 보력, 기부활동 등이 총 8건(6.5%)을 차지하고 있다.

강원성인지통계는 2015년까지는 정책브리프와 함께 보고서로 매년 발간되었으나, 2016 년부터 발간되지 않고 있다. 이에 10주년을 맞아하여 2016년부터 4년간 발행된 강원성인지 통계 중 최근 이슈와 통계들을 중심으로 20편을 선정하여 자료집으로 묶었다.

통계로 본 강원도 여성 현황

수數 수遂한 010i기

숫자로 완성한 강원도 여성의 삶 10년 GANGWONDO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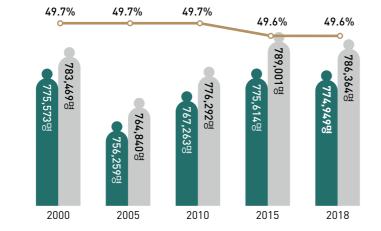
#### 2018년 강원도 여성인구 774,949명으로 총인구의 49.6%

#### 강원도 인구 구성 추이

2018년 강원도 인구는 1,561,313명이며, 여성인구는 774,949명, 남성인 구는 786,364명으로 여성이 전체의 49.6%를 차지함. 여성 인구 구성비는 2000년~2010년 기간 49.7%, 2015년~2018년 기간 49.6%를 유지함.



■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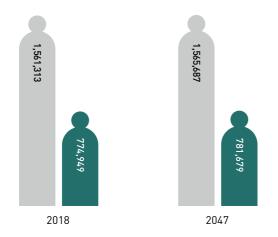


#### 강원도 장래 인구 및 여성인구 변화

#### 자료

통계청,「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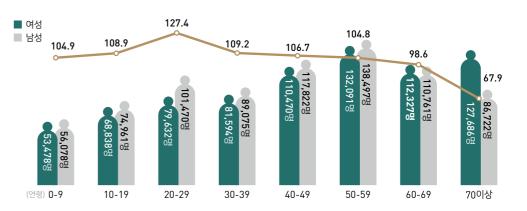
■ 여성인구 ■ 총인구



## 2019년 강원도 **여성인구는 50대**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부터 남성보다 여성인구가 더 많음

#### 2019년 강원도 연령대별 인구 분포

2019년 강원도 여성인구는 50대가 132,091명으로 가장 많고, 10세 이하 가 53,478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성비는 20대가 127.4로 격차가 가장 크고, 60대 이상부터 남성보다 여성인구가 더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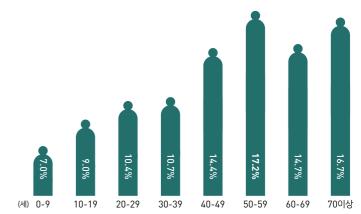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2019년 강원도 연령대별 여성인구

단위: %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여성

2019년 강원도 여성 인구의 연령대별 비중은 50대가 1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0세 이상이 16.7%로 두 번째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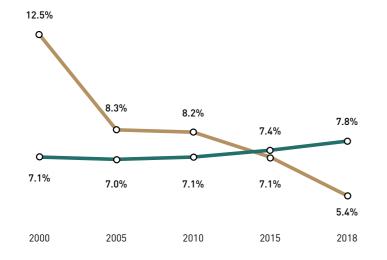
## 강원도 조출생률은 2000년 대비 큰 폭 감소, 조사망률은 증가

#### 강원도 출생아와 사망자 2000~2018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2000년 12.5에서 2018 년 5.4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조사망률의 경우 7.1에서 7.8로 증가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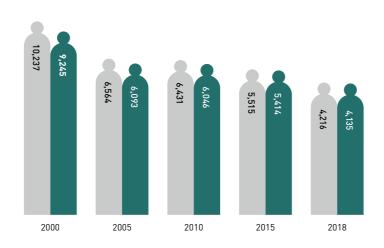
■ 조출생률 ■ 조사망률



출생아 수는 여아 4,135명, 남아 4,216명으로,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사망자의 경우 여성은 5,419명, 남성은 6,557명으로, 2000 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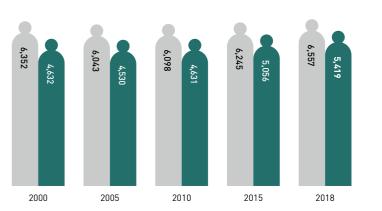
### 출생아

■ 여성 ■ 남성



#### 사망자

■ 여성 ■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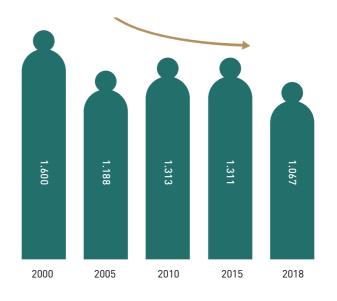
#### 강원도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단위: 명

자료 통계청,「인구동향조사」

■ 여성

가임여성 한명 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은 2000년 이후 매 년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2000년(1.60명)과 비교하여 2018년(1.06명)에는 0.53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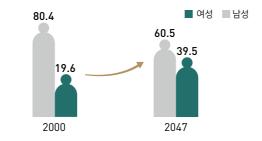
## 가족

## 2000년 대비 2018년 가구수 28.9% 증가, 여성가구주 가구와 1인 가구 비중 증가 추세

#### 일반가구와 장래가구 2000-2047

여성 가구주 비중은 2000년 19.6%에 서 2047년 39.5%로 크게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됨.(2018년 31.1%)

단위: %



#### 가구원 수 비중 변화

1인 가구의 비중도 2000년 18.8%에서 2018년 32.8%로 크게 증가함.

단위 : %

자료 통계청,「인구총조사」



#### 가구 세대별 분포

2018년 가구 세대별 구성은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2세대 비중이39.6% 로 가장 높고, 1인 가구가 32.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2000년과 비교하여 2018년에 2세대, 3세대, 4세대 가구의 비중이 모두 감소한 반면, 1인 가구는 큰 폭(14.0%p)으로 증가함.





#### 1인 가구의 연령대 · 가구주 성별 구성 2018

단위: 명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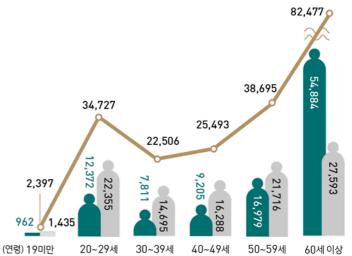
통계청,「인구총조사」

○ 전체 1인 가구

■ 여성

■ 남성

2018년 1인 가구의 구성은 60대 이상 가구주가 82,477 가구로 가장 많으 며, 가구주 성별로 60대 이상에서 여성 가구주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가족형성 |

## 성별 초혼 연령

2000-2019

혼인 건수는 2000년 9,898건에서 2019년 6,762건으로 감소하였으며, 31.6% 감소함. 2019년 평균 초혼연령은 여성 30.3세, 남성 33.1세이고, 이혼 연령은 여성 45.3세, 남성 49.1세로 초혼과 이혼 모두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 으며, 2000년과 비교하여 모두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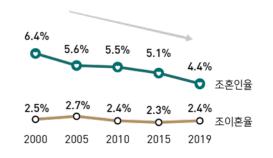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 혼인율은 2000년 6.4%에서 2019년 4.4% 로 2.0%p 감소하였으며, 조이혼율의 경우 2000년 2.5%에서 2019년 2.4%로 0.1%p 감소함.

단위: %

자료 통계청,「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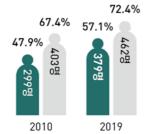
## 경제활동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추세이나 여전히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실업률**은 남성에 비해 더 높음

####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2010-2019

단위: 명,%

■ 여성 - 남성



강원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2010 년 47.9%에서 2019년 57.1%로 증가하였 으나, 여전히 남성(72.4%)에 비해 15.3%p 낮게 나타남.

#### 실업률 추이

단위: %

■ 여성 ■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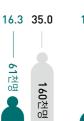
여성 고용률은 2010년 46.9%에서 2019년 54.9%로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2.0%에서 3.7%로 상승하였음. 남성 실업 률 역시 3.0%에서 3.5%로 상승함. 그러나 남성은 0.5%p 상승한 반면 여성은 1.7%p 상승하여,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분포 2019

강원도 여성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2010년 32.1%에서 2019년 41.4%로 증가하였으며 남성의 경우도 2010년 40.6%에서 44.6%로 증가함. 여 성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율은 2010년 21.3%에 비해 2019년 16.3%로 감 소하였으나, 남성의 경우는 31.4%에서 35.0%로 증가함.

단위 : 천명, %

■ 여성 □ 남성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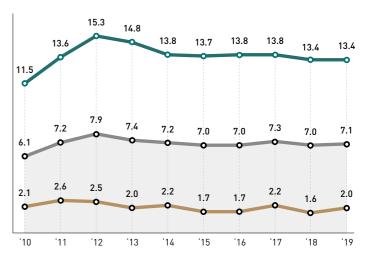


#### 취업자 중 무급 가족종사자 비율 추이 2010~2019

단위: %

- **●●** 전체 여성
-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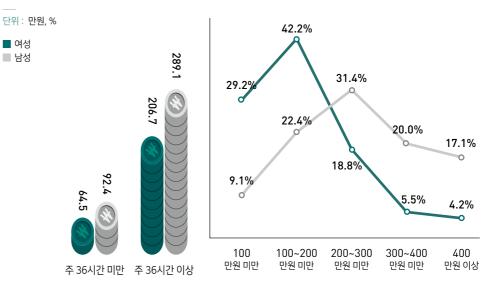
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여성의 경우 2010년 11.5%에서 2019년 13.4%로 증가한 반면, 남성의 경우는 2.1%에서 2.0%로 소폭 감소함



## 2018년 여성 임금근로자 평균월급은 약 206만 7천원, 임금격차는 여성이 남성의 약 70% 수준

####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2018

2018년 강원도 여성 임금근로자 중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의 월평균 임 금은 206만 7천원으로 남성은 289만 천원 수준이며, 여성의 임금의 경우 100~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2.2%로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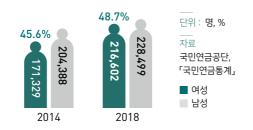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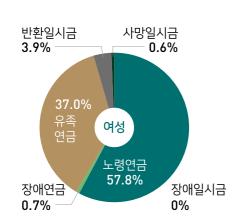
##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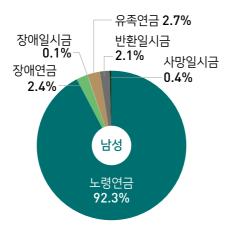
##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여성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가장 많음

2018년 국민연금 가입자 중 여성은 216,602명, 남성은 228,499명으로 2014년(여성 171,329명, 남 성 204,388명) 대비 증가했으며, 여성비율 또한 48.7%로 3.1%p 증가함. 여성의 경우 노령연금 비 중이 57.8%, 유족연금이 37.0%인 반면 남성은 각 각 92.3%, 2.7%로 큰 차이를 보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

2010-2018



2018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여성 137,369 명, 남성 160,420명으로 2010년(여성 80,434명, 남성 120,430명)보다 증가하였으며, 여성 비율도 40.0%에서 46.1%로 증가함.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여성 비율은 **감소 추세**이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가장 많음

2010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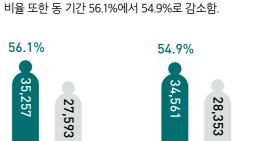
2010-2018

단위: 명,%

####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여성 ■ 남성



2018

#### 연령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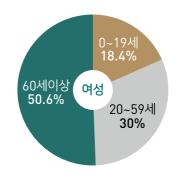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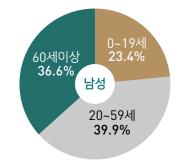
단위: %

2018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여성의 경우 60세 이상이 50.6%로 가 장 많았으며, 남성은 20~59세가 39.9%로 가장 많음.

2018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여성 34,561명, 남성 28,353명으로

2010년(여성 35,257명, 남성 27,593명)에 비해 여성은 감소하였으며, 여성





최근 4년의 강원성인지통계 20선

수數. 수遂.한 010i기

숫자로 완성한 강원도 여성의 삶 10년 GANGWONDO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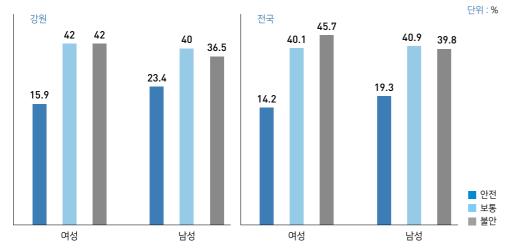
## 젠더 관점에서 본 감염병 재난상황과 대응과제

강원성인지통계 제126호 (2020.4.)

#### 감염병 예방에도 젠더 관점 필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감염병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는 부족 한 현실임. 아직 진행 중인 재난상황으로 데이터 축적 및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를 포 함한 감염확률, 감염병에 대처하는 과정과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고통을 보면 여성에게 더 가혹한 영향 을 미치는 현실을 알 수 있음. 이는 여성의 신종질병 불안감 향상으로 연계됨. 통계청(2018)「사회조사」에 서 강원여성의 신종질병에 대한 불안감은 42%로 강원남성 보다 5.5%p, 전국남성 대비 2.2%p 높은 것으 로 나타남.





자료 통계청(2018),「사회조사」 강원도 자료

감염병은 젠더 불평등이 있는 곳에 연기처럼 스며들어 우리 앞에 드러남.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재택근무와 개학연기, 외출자제는 사회ㆍ경제적 지위가 낮은 맞벌이 여성들에게 자녀양육이나 노부모 등 가족돌봄 노동에 더 많은 부담을 지워 경제활동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나아가 비정규직 콜센터 종사자. 환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간호사, 간호조무 사 등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은 대부분 여성종사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분야임. 이러한 사 회 · 경제적 환경은 강원여성 역시 예외는 아님.

#### 여성의 불안정한 근로환경: 아파도 쉴 수 없는 임시 · 일용직 종사자

상대적으로 해고확률이 높아 근무안정성이 낮은 임시·일용직 일자리는 여성 비율이 높음. 통계청(2018) 「경제활동인구연보」에 따르면, 강원도 여성 임금종사자 중 임시·일용직 종사자는 40.7%를 차지한 반면 남성 은 27.5%임. 전국 임금종사자 중 임시·일용직 종사자는 여성이 남성 보다 12.2%p 높은 38.8%임. 정부는 이 번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줄이기 위해 '아프면 쉰다'를 권고하고 있지만 '아파도 쉴 수 없는' 임시·일용직에게는 구호에 불과함. 대부분 정규직에게 주어지는 휴가, 병가 등의 복지혜택을 상대적으로 해고가 쉬운 임시·일용 직은 이용하기 어렵고 일하지 않을 경우, 일급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렵기 때문임.

#### □표1 □강원도 임금근로자 중 취업자 현황(2018년 4분기)

단위: 천명,%

| _    | ·분             | 계      | 상     | ·용   | 임시·일용 |      |  |
|------|----------------|--------|-------|------|-------|------|--|
| Т    | * <del>*</del> | 71     | 인원 수  | 비율   | 인원 수  | 비율   |  |
| 7101 | 여성             | 248    | 147   | 59.3 | 101   | 40.7 |  |
| 강원   | 남성             | 292    | 212   | 72.5 | 80    | 27.5 |  |
| 저그   | 여성             | 8,858  | 5,425 | 61.2 | 3,433 | 38.8 |  |
| 전국   | 남성             | 11,226 | 8,347 | 73.4 | 2,879 | 26.6 |  |

자료 통계청(2018),「경제활동인구연보」

#### 감염위험 노출 높은 보건 ·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코로나19 감염자 치료 음압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에게서 볼 수 있듯이 병원 위기상황 속에서 여성은 환 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음.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의 여 성비율은 다른 산업분야보다 높음. 통계청(2017)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의 83.5%가 여성이며 강원도 역시 여성비율이 무려 82.4%로 다수를 차지함.

□ 표2 □ 강원도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현황(2017년 상반기)

단위: 천명,%

| 78 | 계     | 여     | 성    | 남성   |      |  |
|----|-------|-------|------|------|------|--|
| 구분 |       | 인원 수  | 비율   | 인원 수 | 비율   |  |
| 강원 | 75    | 61    | 82.4 | 14   | 17.6 |  |
| 전국 | 1,912 | 1,596 | 83.5 | 316  | 16.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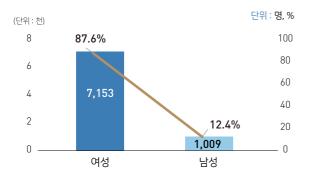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7), 「지역별고용조사」

출처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2018), 「2018 강원성인지통계」

2019년 2월 기준 도내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받은 장기요양기관은 387개소이며, 전체 종사자 8,162명 중 여성은 87.6%임. 한편 코로나19 발생 초기.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운수업 종사자 포함 감염병 취약계층 마 스크 지급대상에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등 돌봄 종사자가 제외됐음(경향신문, 2020.3.15). 여성화된 돌봄 노 동은 아직까지도 개인의 영역으로 여겨지며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마스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논란의 대 상이 된바 있음. 요양보호사는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과의 밀착 접촉이 불가피하고 집단감염이 우려됨. 하지

만 기관차원의 공적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요양보호사들은 마스크 공급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음. 다행히 강 원도청은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을 포함한 기관에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했음을 확인함.

|그림2|강원도 사회복지시설 인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현황(2019년 2월 기준)



출처 허목화·허남재(2019),「강원도 노인돌봄종사자 권익보호 및 돌봄공공성 강화방안」,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정책제안

강원여성의 신종질병에 대한 높은 불안감과 여성종사자의 낮은 근무안정성, 감염위험 노출은 감염병 대 응 및 예방과정에서 성별 관점의 고려가 중요함을 알 수 있음. 감염병 대응 및 예방과정에서 여성의 사회·경 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안을 제안함.

첫째. 많은 여성들이 처해있는 고용불안정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요양보호사 등 임시·일용직의 활동지 속 어려움과 제약은 고용불안정에서 기인함.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임시·일용직 여성종사자들이 계속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둘째, 여성의 열악한 근로환경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라는 점에서(백희영·박현영, 2015) 사회적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감염 병 및 독감 예방주사 무료접종 제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담당하는 돌봄 역할로 지역사회의 감염병 환자 발생상황을 가장 먼저 포 착하고 아동, 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책임을 할 수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재난예방교 육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여성들에게도 재난예방교육 기회가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여성종사자가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대응정책 에 관한 젠더적 관점의 논의는 부족했음.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종사자의 근로현실과 목소리를 반영 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함.

성별 임금격차, 어디까지 왔나

강원성인지통계 제125호 (20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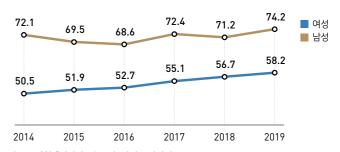
지난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로 1908년 미국의 봉제공장에서 남성노동자의 절반 이하의 임금으로 일 하던 여성노동자들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참정권과 근로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것에 서 시작되었음.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018년 기준 100대 63으로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임.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는 '제4회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STOP 파업대회'를 준비하였음1).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본고는 강원도 임금근로자의 성별 소득분포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 주변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고자 함.

#### 경제활동참가율과 종사상 지위의 성별 차이

강원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8.2%로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74.2%보다 16.0%p 낮음.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남성 경제활동참가율과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4년 대비 2019년 7.7%p 증가하였음.

□그림1 강원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상반기

□표1 □ 강원도 성별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

| 구분 |    | 상용근로자   | 임시/일용근로자 | 임금근로자(계) |  |
|----|----|---------|----------|----------|--|
| он | 인구 | 155,038 | 108,642  | 263,680  |  |
| 여성 | 비율 | 58.8    | 41.2     | 100.0    |  |
| 나서 | 인구 | 204,321 | 83,018   | 287,339  |  |
| 남성 | 비율 | 71.1    | 28.9     | 100.0    |  |

자료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2019년 상반기

<sup>1)</sup> 한국여성노동자회 및 각종 여성단체의 세계여성의날 기념 행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온라인 활동으로 대 체되었음.

####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분포와 성별 격차

강원도 여성 임금근로자는 약 26만 명이고, 남성은 약 28만 명임. 이 중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 근로자의 비율은 여성이 41.2%, 남성이 28.9%로 나타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강원도 여성 10명 중 4명은 임시·일용근로자로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있음.

│<u>표</u>2│임금근로자 평균소득-중위소득 갭

|    | 평균소득(A) | 중위소득(B) | 갭(A-B) |
|----|---------|---------|--------|
| 전국 | 266.5   | 230.0   | 36.5   |
| 강원 | 223.9   | 200.0   | 23.9   |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9년 상반기 원자료 분석

2019년 강원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23.9만원이며, 중위소득은 200만원임. 중위소득이 평균 소득보다 낮다는 것은, 평균 이하의 소득자가 인구의 절반을 넘는다는 의미임. 또한 평균 이하 소득과의 차 가 클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강원도는 전국 평균과 비교해 임금소득이 낮은 분위에 위치하고, 상위소득과 하위소득간 차이가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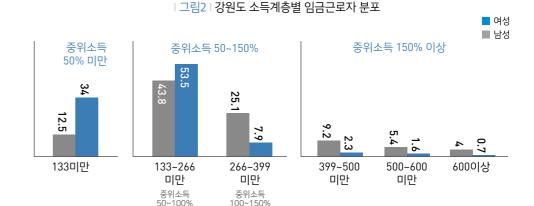
※ 평균소득은 임금근로자의 전체소득을 임금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며. 중위소득은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 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임.

□표3 □소득계층별 임금근로자 분포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                       |  |  |  |  |
|---------------------------------------|----------------------|-------------------------|-----------------------|--|--|--|--|
|                                       | 중위소득 50%미만<br>(저소득층) | 중위소득 50-150%<br>(중간소득층) | 중위소득 150%이상<br>(고소득층) |  |  |  |  |
| 전국                                    | 15.9                 | 66.1                    | 18.0                  |  |  |  |  |
| 강원                                    | 22.8                 | 65.3                    | 11.9                  |  |  |  |  |
| 서울                                    | 15.4                 | 62.7                    | 21.9                  |  |  |  |  |
| 부산                                    | 17.8                 | 67.5                    | 14.7                  |  |  |  |  |
| 대구                                    | 17.3                 | 67.6                    | 15.2                  |  |  |  |  |
| 인천                                    | 15.6                 | 71.1                    | 13.3                  |  |  |  |  |
| 광주                                    | 16.2                 | 67.9                    | 16.0                  |  |  |  |  |
| 대전                                    | 14.1                 | 67.1                    | 18.8                  |  |  |  |  |
| 울산                                    | 13.5                 | 63.5                    | 23.0                  |  |  |  |  |
| 세종                                    | 10.8                 | 55.2                    | 34.0                  |  |  |  |  |
| 경기                                    | 14.2                 | 65.8                    | 20.0                  |  |  |  |  |
| 충북                                    | 15.1                 | 69.0                    | 15.8                  |  |  |  |  |
| 충남                                    | 13.8                 | 67.9                    | 18.3                  |  |  |  |  |
| 전북                                    | 20.0                 | 67.1                    | 12.9                  |  |  |  |  |
| 전남                                    | 20.9                 | 64.4                    | 14.7                  |  |  |  |  |
| 경북                                    | 18.5                 | 66.5                    | 15.0                  |  |  |  |  |
| 경남                                    | 16.4                 | 68.2                    | 15.4                  |  |  |  |  |
| 제주                                    | 19.7                 | 68.5                    | 11.8                  |  |  |  |  |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9년 상반기 원자료 분석 주) 소득계층은 전국 중위임금(266만원)을 기준으로 구분함

통계청과 OECD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 미만을 '저소득층', 50~150%를 '중간소득층', 150% 이상을 '고소득층'으로 구분함. 강원도의 중간소득층 근로자는 65.3%이며, 저소득층 근로자는 22.8%, 고소득층 근로 자는 11.9%임. 강원도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로 가장 많은 반면, 고소득층 근로자비율은 전국 대비 16위로 그 비율이 매우 적은 소득분포를 이루고 있음.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9년 상반기 원자료 분석

중위소득 50% 미만 저소득층 근로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전국 여성근로자의 25.5%가 저소득층 근로자 이며, 강원도는 전체 여성근로자의 34.0%가 저소득층 근로자로 나타남. 전국과 강원도 모두 남성 근로자보 다 여성 근로자의 저소득층 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강원도는 여성 저소득층 근로자의 비율이 남 성 저소득층 근로자의 비율보다 21.5%p 높게 나타나. 전국 격차(17.3%)보다 큼.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의 확산은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하였고, 코로나에서 비롯된 경제위기에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는 더욱 취약함. 우리는 저소득층과 불안정 근로자의 대다수는 여성이라는 점을 기억 해야 함. 유엔여성기구 마리아 홀츠버그 인도주의 및 재난위험 특보는 "위기는 항상 성차별을 심화시킨다"고 말한바 있음(BBC 월드, 2020.3.10.). 최근 위기상황으로 인해 노동시장 내 성차별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주 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03

## 노인의 경제현실, 일하고 싶은 노인인가, 일해야 하는 노인인가

강원성인지통계 제124호 (2020.2.)

■ 2019년 상반기 ■ 2009년

행정안전부의 2020년 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강원도의 만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9.8% 이며,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양양군(28.8%)를 비롯하여 강원도의 13개 시군의 고령화 비율이 20%가 넘어 초고령사회로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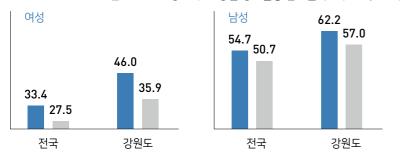
※ 강원도 65세 이상 인구 중 여성 56.9%, 남성 43.1%(2020.1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강원도의 고령화 비율이 특히 높은 편이기는 하나 2019년말 기준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서 96개에 이름. 더욱이 올해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 출생자)가 만 65세가되면서 노인 인구로 편입되어 고령화 비율이 가속화될 전망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상대적 빈곤율 48.3%, OECD 평균 12.5%)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빈곤 문제를 함께 고민할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를 성별 특성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함.

#### 강원도 노인경제활동참여의 변화와 성별 특성

2009년 강원도 60세 이상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35.9%에서 2019년 46%, 같은 기간 60세 이상 남성은 57%에서 2019년 62.2%로 상승함. 최근 10년 간 상승폭에서 여성이 10.1%p 증가한 데 비해 남성은 5.2%p 증가함.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일하고 싶은 노인들....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연합신문, 2019.6.16.) 강원도 60세 이상 남녀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위 동일 기간 전국수치에 비해 모두 앞서고 있음.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기여한 바가 있을 것으로 추정함(2019년 57,471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강원도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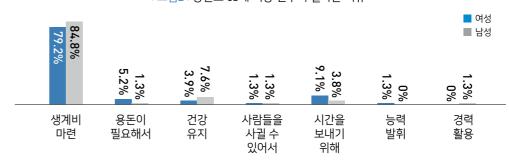


출처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 강원도 노인들, 왜 일하는가?

강원도 노인들이 현재 일을 하는 절대적 이유는 '생계비 마련'(여성 79.2%, 남성 84.8%)과 '용돈의 필요'(여성 5.2%, 남성 1.3%) 비율을 남녀 모두 80%를 상회하여 노인의 소득 활동이 절실한 문제임을 보여줌. 그외 여성노인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9.1%), 남성노인은 '건강 유지를 위해'(7.6%)라고 응답하여 성별 간 차이를 보임

□그림2 □ 강원도 65세 이상 인구의 일하는 이유



출처 2017년 노인 실태조사

#### 강원도 노인들, 생활비 어떻게 마련하나?

□표1□강원도 65세 이상 인구의 생활비 원천

|          | 구분               | 전체(%) | 여성(%) | 남성(%) |
|----------|------------------|-------|-------|-------|
|          | 합계               | 100.0 | 100.0 | 100.0 |
|          | 소계               | 69.1  | 68.5  | 70    |
|          | 본인 또는 배우자 일(A)   | 13.7  | 9.8   | 19.3  |
|          | 예금, 적금           | 2.2   | 2     | 2.5   |
|          | 공적 연금(B)         | 11.8  | 9.6   | 14.9  |
| 단일       | 개인 연금            | 1     | 0.9   | 1.3   |
| 수단       | 부동산              | 1.7   | 1.6   | 1.9   |
|          | 함께 사는 자녀(C)      | 5     | 6.7   | 2.7   |
|          | 따로 사는 자녀(D)      | 11.4  | 14.8  | 6.6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조(E) | 21.4  | 22.3  | 20.1  |
|          | 기타               | 0.7   | 0.8   | 0.6   |
|          | 소계               | 30.9  | 31.5  | 30    |
|          | A+B              | 4.1   | 2.4   | 6.5   |
|          | A+D              | 1.9   | 2     | 1.8   |
| 복합<br>수단 | B+D              | 3.9   | 4.1   | 3.5   |
|          | C+D              | 0.7   | 0.9   | 0.4   |
|          | D+E              | 9.5   | 11.8  | 6.3   |
|          | 기타               | 10.8  | 10.3  | 11.4  |

출처 통계청(2015), 인구총조사

강원도 노인의 생활비 원천은 단일수단과 복합수단으로 구성됨. 남녀 모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여성 22.3%, 남성 20.1%)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여성노인은 자녀 지원 21.5%, 따로 사는 자녀와 국가/지방자치단체보조(복합수단) 11.8%, 본인 또는 배우자 일 9.8%, 공적연금 9.6% 순으로 나타남. 강원도 남성노인의 생화비 위치은 보인 또는 배우자 일 9.8%, 공적연금 14.0%, 보인 또는 배우자 의과 고저연금(보하스다)

성 22.3%, 남성 20.1%)가 가장 많은 부문을 자시함. 여성도인은 사더 시원 21.5%, 따로 자른 자더와 국가/시 방자치단체보조(복합수단) 11.8%, 본인 또는 배우자 일 9.8%, 공적연금 9.6% 순으로 나타남. 강원도 남성노 인의 생활비 원천은 본인 또는 배우자 일 19.3%, 공적연금 14.9%, 본인 또는 배우자 일과 공적연금(복합수단) 6.5% 순을 보임.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이라는 공적 경로를 통한 생활비 충당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남성에 비해 여성은 사적 이전인 자녀의 지원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강원도 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성별 간 차이가 뚜렷함. 남성노인은 150 만원 이상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가장 많았으며(28.2%), 29만원 미만(23.1%), 50-59만원(20.5%)이 그 뒤를 이음. 반면 여성노인 중 대다수(42.1%)는 29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거나 아예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도 23.7%에 이름. 특히 여성노인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는 5.3%에 불과하여 성별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남.

#### 강원도 노인들, 월평균 소득은 얼마인가?

□표2 □ 강원도 65세 이상 인구의 월평균 근로소득 현황

|    | 근로소득<br>없음 | 1-29만원 | 30-49만원 | 50-59만원 | 100-149만원 | 150만원 이상 |
|----|------------|--------|---------|---------|-----------|----------|
| 여성 | 23.7%      | 42.1%  | 6.6%    | 15.8%   | 6.6%      | 5.3%     |
| 남성 | 2.6%       | 23.1%  | 7.7%    | 20.5%   | 17.9%     | 28.2%    |

출처 2017년 노인 실태조사

노인 이슈를 대하는 심경은 정책만큼 심란함. 활기차고 건강한 고학력 자산가 노인이 증가하는 한편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인도 많음. 강원도의 노인들은 일하고 싶은 노인인가, 일해야 하는 노인인가? 정책이 할 일은 일 '하고 싶은'노인과 일 '해야 하는' 노인의 간극을 좁혀가는 것이 중요함. 특히, 2020년부터 노인세대와는 교육수준, 건강상태, 일자리 경력 등에서 뚜렷이 구별되는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노인세대로 진입하게 됨. 새로운 노인 세대의 등장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 다양한 일거리 마련해야 하며, 이는 노인일자리 유형의 성별분업 고착화 등 성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함.

## 04 여성공무원의 현황과 경력관리

강원성인지통계 제123호 (2020.1.)

여성의 사회활동이 당연하게 인식되는 상황임에도 경제나 노동시장 참여, 관리직 비율 등 우리나라가 성 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해결해야 될 숙제는 여전히 너무 많음. 2019년 12월 세계경제포럼(WFE)이 발표한 국 가별 성별격차에서 108위를 기록해 우리나라의 성별격차 심각성이 여과 없이 드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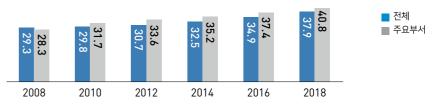
이러한 성별격차 속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선도적으로 도입된 공무원이 여성들에게 최고 인기 직업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임. 2019년 실시된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지원자만 보더라 도 전체 지원자 245,677명 중 여성의 비율은 절반을 훨씬 넘긴 56.5%(138,857명)으로 남성보다 높음. 전반 적으로 여성공무원의 현황과 경력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원도 여성공무원의 현황은 어떤지 통 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의 증가와 주요부서 배치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지방직 공무원) 수는 322,862명으로, 이중 여성공무원의 수는 37.9%인 122,227명으로 나타남. 특히 2012년에 여성비율이 30%를 넘었고, 이후 6년만인 2018년에는 7% 이상 증가하여 여성의 비율이 37.9%로 나타남.

여성공무원의 진입 증가와 함께 눈에 띠는 특징은 경력관리가 다양화 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림1 | 전국 여성공무원 및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배치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지방자치단체여성공무원 통계」

이러한 경력관리 변화는 지방자치단체 주요부서인 기획, 예산, 인사, 감사, 실국주무과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음. 기획이나 예산 등 직무능력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된 여성공무원의 수는 2008년 8,500명으로 주요부서의 28.3% 정도였으나, 2018년에는 15,381명으로 주요부서의 40.8%에 여성공무원이 배치되어 주요부서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경력을 쌓는 여성공무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알 수 있음.

#### 강원도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 증가

강원도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공무원 수는 전체 18,599명으로, 이 중 여성 공무원은 전체의 32.4%인 6,019명으로 나타남. 강원도 여성공무원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2008년도 25.6%였으나 2012년 26.1%로 조금씩 증가하여, 2016년 처음으로 30%를 넘었고, 2018년에는 32.4%로 나타남.

□표1 □ 강원도 여성공무원 비율과 5급 이상 관리직의 여성공무원 비율

|       | 2008   | 2010   | 2012   | 2014   | 2016   | 2018   |
|-------|--------|--------|--------|--------|--------|--------|
| 여성    | 25.6%  | 25.5%  | 26.1%  | 27.7%  | 30.4%  | 32.4%  |
| 공무원 수 | 4,030명 | 4,103명 | 4,231명 | 4,502명 | 5,220명 | 6,019명 |
| 5급 이상 | 5.0%   | 5.8%   | 5.7%   | 6.9%   | 8.9%   | 13.1%  |
| 여성공무원 | 51명    | 62명    | 64명    | 81명    | 108명   | 172명   |

출처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강원도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2008년 5급 이상 전체 공무원 1,030명 중 51명으로 5.0%에서, 2010년에는 5.8%, 2012년 5.7%로 다소 증가했으며, 2016년에 108명으로 처음 100명 선을 넘었고, 2017 년 11.8%로 처음 10%를 넘었음. 가장 최근 통계인 2018년에는 전체 5급 이상 공무원 1,310명 중 13.1%인 172명으로 나타나 유리천정의 문제는 다소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위원회 등에서 제시하는 40% 기준 에는 많이 못 미치는 상황임.

#### 전국 대비 강원도 여성공무원의 위상

강원도 여성공무원의 수를 2018년 기준 전국 통계와 비교해 보면, 여성공무원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체 비율 평균인 37.9%과 비교해도 5%이상 낮은 것 임. 또한 5급 이상의 강원도 여성공무원 비율은 13.1%로 늘어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전국 평균 15.6%에 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강원도청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은 740명으로 강원도청 현원 5,353명의 14%이고, 경기도청에서 근무 하는 공무원 11,978명 중 여성공무원은 2,196명으로 나타남. 여성 공무원의 기획 능력 개발 등을 위해서는 상급기관에 대한 순환배치 필요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여성의 공직 진입 증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자체로도 의미가 있음. 하 지만, 단순히 진입의 증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경력관리 등을 통해 기존의 한 정된 분야에만 여성 관리자가 배치되는 기존틀을 깨고 보다 다양한 정책분야로의 진출을 도모하는 것이 필 요함. 이를 위해서는 여성공직자의 공직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일 가정 양 립 지원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폭넓은 교육기회와 주요 보직배치 등을 통한 능력개발 기회를 더 많이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함.

□표2 □전국 5급 이상 관리직의 여성공무원 비율

|         | 2018    |         |       |        |         |       |
|---------|---------|---------|-------|--------|---------|-------|
|         |         | 전체 공무원  |       |        | 급이상 공무원 |       |
|         | 전체      | 여성      | 비율(%) | 전체     | 여성      | 비율(%) |
| 계       | 322,862 | 122,227 | 37.9  | 23,305 | 3,631   | 15.6  |
| 서울특별시   | 50,599  | 20,765  | 41    | 3,455  | 803     | 23.2  |
| 부산광역시   | 19,088  | 8,027   | 42.1  | 1,492  | 321     | 21.5  |
| 대구광역시   | 12,912  | 4,621   | 35.8  | 1,007  | 149     | 14.8  |
| 대전광역시   | 7,704   | 2,837   | 36.8  | 696    | 114     | 16.4  |
| 인천광역시   | 14,515  | 5,424   | 37.4  | 1,348  | 203     | 15.1  |
| 광주광역시   | 7,956   | 3,100   | 39    | 764    | 160     | 20.9  |
| 울산광역시   | 6,409   | 2,487   | 38.8  | 612    | 115     | 18.8  |
| 세종특별자치시 | 1,906   | 652     | 34.2  | 282    | 46      | 16.3  |
| 경기도     | 54,864  | 22,261  | 40.6  | 3,597  | 519     | 14.4  |
| 강원도     | 18,599  | 6,019   | 32.4  | 1,310  | 172     | 13.1  |
| 충청북도    | 13,947  | 4,984   | 35.7  | 965    | 135     | 14    |
| 충청남도    | 18,180  | 6,368   | 35    | 1,219  | 113     | 9.3   |
| 전라북도    | 17,042  | 6,474   | 38    | 1,201  | 159     | 13.2  |
| 전라남도    | 21,698  | 7,886   | 36.3  | 1,440  | 155     | 10.8  |
| 경상북도    | 26,745  | 8,801   | 32.9  | 1,684  | 177     | 10.5  |
| 경상남도    | 24,836  | 9,525   | 38.4  | 1,606  | 186     | 11.6  |
| 제주도     | 5,862   | 1,996   | 34    | 627    | 104     | 16.6  |

#### UE

## 장애인 학대 피해 경험,현실과 대처 방안

강원성인지통계 제122호 (2019.12.)

국가 및 지자체는 2017년부터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올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5개 관련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장애인의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함. 이에 발맞춰 강원도에서도 장애인 학대 피해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도내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본 성인지 통계는 본원에서 수행한 「2019 강원도 장애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원자료(조사대상자수 총 1,006명)를 활용하였음.

최근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학대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장애인은 여러 영역에서 차별상황에 놓이게 되며 특히 여성장애인은 성범죄와 학대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음. 2019년 8월 기준 강원도 내 전체 장애인수는 101,284명으로 이중 여성장애인 42,697명, 남성 장애인58,587명임.

- \* 강원도민일보 "2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혐의 마을주민 무더기 송치", 2019.03.30.
- \* 강원일보 "원주 장애여성 절반 "가정폭력 경험" 2018.09.21.
- \* 강원일보 "성폭력·경제적 착취 ··· 학대 당하는 장애인들". 2019.04.23

#### 학대유형별 장애인 피해경험의 성별 차이

도내 전체 장애인이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을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해 추정한 결과, 전체 장애인 101,284명 중 여성이 4.4%(1,886명)로 남성 3.4%(1,975명)보다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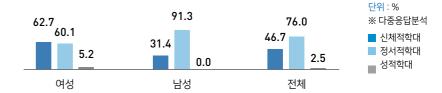
#### | 표1 |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학대받은 경험

단위:%(명)

| 구분 | 예           | 아니오  | 전체    |
|----|-------------|------|-------|
| 여성 | 4.4(1,886명) | 95.6 | 100.0 |
| 남성 | 3.4(1,975명) | 96.6 | 100.0 |
| 전체 | 3.8(3,861명) | 96.2 | 100.0 |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도내 장애인의 전체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46.7%, 정서적 학대 76.0%, 성적 학대 2.5%로 나타남. 이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의 경우 여성은 62.7%로 남성(31.4%)에 비해 31.3%p나 더 높은 두배의 수치를 보였으며, 정서적 학대의 경우 남성이 91.3%로 여성 (60.1%)보다 31.2%p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성적 학대의 경우 여성 장애인만이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성적 학대 및 성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함.

#### □그림1□장애인 학대 유형별 피해 경험의 성별 차이



#### 장애인 학대의 가해자 유형

학대의 주된 가해자를 보면, 전체 장애인의 51.1%가 친구·이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배우자 24.9%, 부모 10.4%, 시설종사자 7.9% 순으로 나타남. 하지만 성별로 구분해보면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학대 가해자는 배우자가 51.0%, 친구·이웃 27.5%, 부모 15.6%, 직장동료 5.9% 순으로 나타나서 주로 가족관계 내 학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반면 남성의 경우 학대 가해자가 친구·이웃 73.6%, 배우자 24.9%, 시설종사자 15.4% 순으로 나타나 주로 사회관계에서 학대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2 □장애인 학대의 가해자 유형

단위 : %, 명

| 구분 | 배우자  | 부모   | 친인척 | 친구<br>· 이웃 | 시설종사자 | 직장<br>동료 | 전체    |
|----|------|------|-----|------------|-------|----------|-------|
| 여성 | 51.0 | 15.6 | -   | 27.5       | -     | 5.9      | 100.0 |
| 남성 | -    | 5.4  | 5.6 | 73.6       | 15.4  | -        | 100.0 |
| 전체 | 24.9 | 10.4 | 2.9 | 51.1       | 7.9   | 2.9      | 100.0 |

#### 장애인 피해자의 대처행동

학대 피해 시 가해자의 대처행동으로 전체 응답 중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쳤음"이 3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다음으로 "그냥 있었음" 26.3%, "몰라서 그냥 넘어갔음" 18.2%, "그 자리에서 항의하였음" 10.1% 순으로 나타남. 반면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은 4.4%에 불과하였음.

□표3 □학대 가해자에 대한 장애인 피해자의 대처행동

단위:%,명

| 구분 | 그냥 있었음 | 자리를<br>피하거나<br>도망쳤음 | 그 자리에서<br>항의하였음 | 주위에<br>도움을<br>요청하였음 | 몰라서 그냥<br>넘어갔음 | 진정 · 고발<br>등의 조치를<br>취하였음 | 전체    |
|----|--------|---------------------|-----------------|---------------------|----------------|---------------------------|-------|
| 여성 | 17.3   | 40.8                | 5.9             | 14.1                | 12.9           | 9.0                       | 100.0 |
| 남성 | 34.9   | 27.8                | 14.1            | -                   | 23.1           | -                         | 100.0 |
| 전체 | 26.3   | 34.1                | 10.1            | 6.9                 | 18.2           | 4.4                       | 100.0 |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은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쳤음"이 40.8%로 남성(27.8%)에 비해 13.0%p 높으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음" 14.1%,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9.0%로 여성장애인만 응답하였음. 반면, 남성은 "그 자리에서 항의하였음"이 14.1%로 여성(5.9%)에 비해 8.2%p 높으며, "몰라서 그냥 넘어갔음"이 23.1%로 여성(12.9%)에 비해 10.2%p 높음. 이러한 결과는 학대 피해 시 남성은 그냥 있거나 넘어가는 등 비교적 미온한 대처를 하는 반면, 여성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할 만큼 강력한 학대 피해 경험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장애인 학대피해 예방 및 보호기관 인지도

도내 장애인이 인식하는 학대 피해 예방 및 보호기관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성별 큰 차이 없이 전 반적으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음. 장애인 전체적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해 "알고 있음" 14.3%. "모 른다" 60.9%임. '1366 및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알고 있음" 13.7%, "모름" 62.0%로 나타남. 국가인권위원회 의 경우 "알고 있음" 17.1%로 도내 기관들에 비해 인지도가 높은 편이나, 성별 차이가 두드러져서 여성장애 인의 13.2%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장애인은 19.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함. 대체로 도내 장애인들 은 대부분 학대 피해 예방 및 보호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표4 |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보호기관 인지도

단위:%

|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                    |      | 1366     | 및 성폭력상담            | 소    | 국가인권위원회  |                    |      |  |
|----|------------|--------------------|------|----------|--------------------|------|----------|--------------------|------|--|
| 구분 | 알고<br>있음   | 들어본적<br>있으나<br>내용은 | 모름   | 알고<br>있음 | 들어본적<br>있으나<br>내용은 | 모름   | 알고<br>있음 | 들어본적<br>있으나<br>내용은 | 모름   |  |
| 여성 | 13.3       | 21.1               | 65.6 | 13.5     | 21.8               | 64.7 | 13.2     | 23.8               | 63.0 |  |
| 남성 | 14.9       | 27.6               | 57.4 | 13.8     | 26.1               | 60.1 | 19.9     | 29.0               | 51.0 |  |
| 전체 | 14.3       | 24.9               | 60.9 | 13.7     | 24.3               | 62.0 | 17.1     | 26.8               | 56.1 |  |

#### 장애인 권익향상 방안

도내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6>와 같음. 먼저 성별 차이를 보면, 여 성장애인은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이 26.1%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장애인은 "일반시민 대상 예방교육" 필요성에 26.1%가 가장 많이 응답했음. 장애인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자 상담 및 법률 지원" 25.2%, "일반시민 대상 예방교육" 24.3%, "상담소 및 인권옹호기관 확대" 19.7%, "장애인 대상 예방교육" 11.7%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5 □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단위:%

| 구분 | 피해자<br>상담 및<br>법률 지원 | 상담소 및<br>인권옹호<br>기관 확대 | 피해자<br>쉼터 등<br>확대 | 폭력, 차별<br>관련 법,<br>기관 등<br>홍보 | 장애인<br>대상<br>예방 교육 | 일반 시민<br>대상 예방<br>교육 | 폭력, 차별<br>허용적<br>사회문화의<br>개선 | 기타  | 전체    |
|----|----------------------|------------------------|-------------------|-------------------------------|--------------------|----------------------|------------------------------|-----|-------|
| 여성 | 26.1                 | 20.1                   | 8.9               | 2.3                           | 13.4               | 21.9                 | 5.9                          | 1.3 | 100.0 |
| 남성 | 24.6                 | 19.4                   | 7.9               | 4.0                           | 10.4               | 26.1                 | 5.2                          | 2.4 | 100.0 |
| 전체 | 25.2                 | 19.7                   | 8.3               | 3.3                           | 11.7               | 24.3                 | 5.5                          | 1.9 | 100.0 |

도내 장애인 중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약 3,861명으로 추정할 수 있음. 도내 장애인의 학대 피 해 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신체적 학대와 동시에 성적 학대의 위험 에 노출될 가능성이 남성보다 큼. 또한 이러한 학대는 배우자, 부모, 친인척, 친구 및 이웃 등 대체로 낯선 사 람보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음. 학대 피해를 당할 경우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와 관련 피해 예방 및 보호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대 피해 대처 교육과 학대 예 방·보호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돌봄 일자리 = 여성 일자리 = 저임금 일자리?!

강원성인지통계 제121호 (2019. 11.)

우리는 누구나 돌봄노동의 수혜자임.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족 혹은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여 성장 하며, 질병, 장애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누군가의 돌봄에 의존하지 않던 '독립적인 개인' 역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함. 돌봄은 인간의 생애 과정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임

제조업 중심 완전 고용에 기반을 둔 '남성 1인 생계부양자-여성 가족 내 돌봄노동자' 모델의 사회에서 돌봄 은 사적영역에서 이뤄지는 일로 국가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음. 하지만 고령화로 부양이 필요한 인구가 증 가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필요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돌봄은 가족이라는 사적영역에서 벗어나 공적영 역의 주요 문제로 부상함.

#### 돌봄일자리 = 여성일자리

강원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8년 54.6%로 2013년과 비교하여 5.1%p 상승하였음. 2013년 대비 2018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여성고용이 2만 7천명이 증가하여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을 견인 하는 주요 직종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종사자 중 여성 비율이 전체 산업에서 가장 높은 직종으로 2018년 종사자의 78.0%가 여성임.

□표1□강원도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명

|                          |    |      |          |    |      |          | L11. L0              |  |
|--------------------------|----|------|----------|----|------|----------|----------------------|--|
|                          |    | 2013 |          |    | 2018 |          | 여성 취업자               |  |
| 구분                       | 여성 | 남성   | 여성<br>비율 | 여성 | 남성   | 여성<br>비율 | 2013년 대비<br>2018년 증감 |  |
| 농림어업                     | 44 | 66   | 40.0     | 38 | 62   | 37.6     | -6                   |  |
| 광업                       | 0  | 6    | 0.0      | 0  | 6    | 0.0      | 0                    |  |
| 제조업                      | 17 | 31   | 35.4     | 21 | 31   | 40.4     | 4                    |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  | 4    | 20.0     | 1  | 4    | 20.0     | 0                    |  |
| 하수 ·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  | 3    | 25.0     | 1  | 4    | 16.7     | 0                    |  |
| 건설업                      | 4  | 56   | 6.7      | 6  | 63   | 8.6      | 2                    |  |
| 도소매업                     | 36 | 47   | 43.4     | 42 | 47   | 47.7     | 6                    |  |
| 운수업                      | 2  | 24   | 7.7      | 2  | 29   | 6.5      | 0                    |  |
| 숙박 및 음식점업                | 52 | 29   | 64.2     | 56 | 34   | 62.2     | 4                    |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2  | 6    | 25.0     | 5  | 9    | 38.5     | 3                    |  |
|                          |    |      |          |    |      |          |                      |  |

|                                   |    | 2013 |          | 2018 |    |          | 여성 취업자            |  |
|-----------------------------------|----|------|----------|------|----|----------|-------------------|--|
| 구분                                | 여성 | 남성   | 여성<br>비율 | 여성   | 남성 | 여성<br>비율 | 2013년 대비 2018년 증감 |  |
| 금융 및 보험업                          | 7  | 9    | 43.8     | 12   | 9  | 57.1     | 5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3  | 6    | 33.3     | 4    | 7  | 36.4     | 1                 |  |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5  | 8    | 38.5     | 5    | 8  | 35.7     | 0                 |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13 | 16   | 44.8     | 14   | 22 | 38.9     | 1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20 | 39   | 33.9     | 27   | 43 | 38.0     | 7                 |  |
| 교육서비스업                            | 35 | 23   | 60.3     | 34   | 19 | 64.2     | -1                |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44 | 12   | 78.6     | 71   | 20 | 78.0     | 27                |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6  | 10   | 37.5     | 7    | 10 | 41.2     | 1                 |  |
|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 17 | 19   | 47.2     | 20   | 20 | 50.0     | 3                 |  |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br>자가소비생산활동 | 1  | 0    | 100      | 0    | 0  | 0.0      | -1                |  |
| 국제 및 외국기관                         | 0  | 0    | 0.0      | 0    | 0  | 0.0      | 0                 |  |
|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    |      |          |      |    |          |                   |  |

국가는 자녀, 노인 등 가족 내 돌봄노동 때문에 경력단절이 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기 위 해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이렇게 사적영역에서 벗어난 돌봄일자리의 종사자 대부분은 여성으로 채워짐. 2018년 강원도의 보육교사 중 여성의 비율은 99.2%이고 2018년 12월 31일 기준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6,447명이고 2),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중 여성의 비율은 87.6%임 3). 본고는 강원도 돌봄일자리 질을 파악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정보서비스 제공포털 워크넷에서 돌봄일자리의 대표적인 보육교사 와 요양보호사의 구인임금을 분석함.

#### 돌봄 일자리 임금 = 여성 일자리 임금 = 최저임금

2018년 워크넷에 구인 등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평균 구인임금은 1,504,345원으로 최저임금의 95.6% 수준임.

□표2 □ 2018년 워크넷 보육교사 구인 평균임금

| 구분              | 2018         |  |  |  |
|-----------------|--------------|--|--|--|
| 보육교사 평균 구인임금    | 1,504,345.5원 |  |  |  |
| 최저임금            | 1,573,770원   |  |  |  |
| 최저임금 대비 보육교사 임금 | 95.6%        |  |  |  |

워크넷에 등록된 시설 요양보호사의 구인 평균임금은 1,694,514원으로 최저임금의 107.7%에 불과해 돌봄 노동자들은 정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요양보호사는 경력 에 따른 임금인상이 없어 구인임금이 실제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임금과 같음.

│ 표3 │ 2018 워크넷 시설 요양보호사 구인 평균임금

| 구분              | 2018         |
|-----------------|--------------|
| 시설요양보호사 평균 구인임금 | 1,694,514.9원 |
| 최저임금            | 1,573,770원   |
| 최저임금 대비 보육교사 임금 | 107.7%       |

재가 요양보호사는 시급으로 시간당 임금으로 책정되어 월급개념의 보육교사, 시설 요양보호사와 노동조 건이 다름. 2017년 전국 재가 요양보호사의 구인 최소임금은 8,350원이며 2019년에는 10,415원으로 25% 상 승함. 그러나 2017년 대비 2019년의 최저임금 인상율이 29.1%인 것을 생각한다면, 높은 수준으로 임금이 상 승하였다고 볼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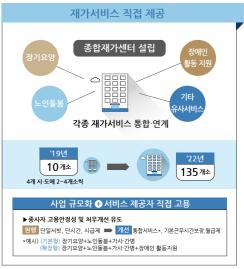
| <u>표4</u> | 워크넷 재가 요양보호사 구인 평균시급(2017~2018)

| 2017      | 2018      | 2019       | 2017년 대비<br>2019년 증감률 |
|-----------|-----------|------------|-----------------------|
| 8,368.91원 | 9,347.17원 | 10,465.63원 | 25.1%                 |

특히 재가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쉽게 해고되는 등 고용안정성이 매우 취약함. 예를 들어 재가요양보호사는 매일 시급으로 임금이 계산되는데, 만약 서비스 이용자가 두명인 경우 한명에게 병원 입원 등의 사유가 생기면 그 기간 동안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짐.

#### 돌봄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노력





출처 보건복지부, 2019.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현행) 단일 서비스, 단시간, 시급제 → (개선) 통합서비스, 기본근무시간 보장, 월급제

<sup>2) 2018</sup>년 12월 31일 기준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6,447명이고, 이중 남성 보육교사는 53명이 불과함. 3) 위 비율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인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비율임.

정부는 올해부터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시범운영하고 있음. 강원도 역시 2020년부터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계획임.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종합 재가센터를 설립하여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임. 재가서비스 사업의 규모화와 서비스 제공자의 직접 고용을 통해 고용안정성 및 처우개선을 유도함.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이 강원도 돌봄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한편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는 요양지도사 자격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함. 요양지도사는 전문대학 등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이를 이수한 자에게 중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요양보호사의 경력개발 및 젊은 인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임.

하지만 요양지도사와 비슷하게 전문대학에서 관련 과정을 이수하는 등 비슷한 과정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보육교사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함. 따라서 우리는 보다 근본적으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와 같이 돌봄 노동을 담당하는 여성 집중 직군의 저임금은 정당한가?"에 대해 질문해야 함. 이와 관련해 호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호주의 경우 유사한 노동을 수행하는 공공부문 노동자에 비하여 돌봄노동자의 임금이 낮은 것을 통계를 통해 확인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을 바탕으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행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돌봄노동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sup>07</sup> 자연재해 위험의 성별 격차, 대응과 예방

강원성인지통계 제120호 (2019, 10.)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과 속초 등 4개 시군에서 대형 산불피해가 발생했음. 이 불로 사망자 2명(여성 1명, 남성 1명), 부상자 2명, 총 566세대, 1,28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음. 이는 우리나라 산불피해 중 역대 최대 수준임. 2005~2014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횟수와 피해액을 시도별로 비교하면, 강원도는 전국에서 발생횟수가 전라남도 다음으로 많고 자연재해 피해액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7).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과 호우강도가 더 강해지고 피해가 커지면서 사회가 책임져야 할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강원여성의 자연재해 불안감과 재난·긴급상황 대처능력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강원여성의 자연재해 불안감

2016년 강원여성 10명 중 5명(51.1%)은 자연재해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강원남성 보다 9.6%p, 전국여성 대비 12.3%p, 전국남성 대비 18.2%p 높은 수치임.



| 그림1 | 강원여성의 자연재해 안전 인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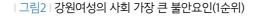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6), 「사회조사」 자료

출처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2018), 「2018 강원성인지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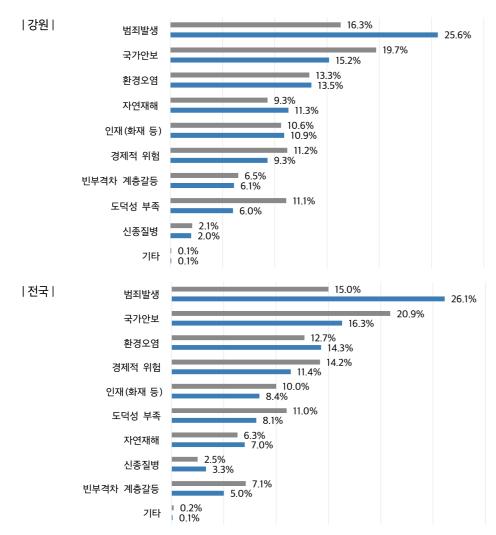
2018년 가장 큰 사회불안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강원여성은 '범죄발생'이라는 응답이 25.6%로 가장 높았으며 국가안보, 환경오염 다음으로 자연재해가 4순위로 높게 나타남. '자연재해'가 가장 불안하다는 강원 여성은 11.3%로 강원남성보다 2.0%p 높게 나타남. 강원남성의 사회불안요인 역시 '범죄발생'이 16.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하지만 자연재해는 국가안보, 환경오염, 경제적 위험, 도덕성 부족, 인재(화재 등) 다음으로 6 순위로 높게 나타나 강원여성과 남성 간 자연재해 불안에 대한 성별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됨.

특히 '자연재해'가 가장 불안하다는 강원여성은 전국여성(7.0%) 보다 약 1.6배 높은 수치이며 '자연재해'

는 강원여성과 전국여성 간 인식차이가 가장 큰 사회안전 유형으로 나타남. 전국여성은 7.0%만이 자연재해 가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이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범죄발생, 국가안보, 경제적 위험, 인명(화재 등), 도덕 성 부족 다음으로 7순위로 나타남



■남성 ■여성



자료 통계청(2018),「사회조사」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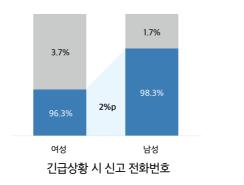
강원여성과 남성의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감은 전국여성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 해 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 등의 재해를 매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또한 강원 여성의 자연재해 불안감은 강원남성, 전국남성 보다 높게 나타나 재난안전에 관한 성별특성 반영 필요성 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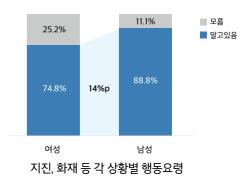
#### 강원여성의 재난 · 긴급상황 대처수준 현황

자연재해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소화기, 심폐소생술 방법을 알고 있는 강원여성은 얼마나 될까? 긴급상황 대처수준에서도 성별 간 차이는 존재할까? 결론은 강원여성의 재난·긴급상황 대처는 미흡한 수준이며 강원 남성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강원여성(96.3%)과 남성(98.3%) 대부분은 '긴급상황 시 신고 전화번호(119 등)'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 지만 강원여성의 '신고 전화번호(119 등)'인지율은 강원남성 보다 2%p 낮게 나타남. 다음으로 '지진, 화재 등 각 상황별 행동요령에 대해 강원남성은 10명 중 9명(88.8%)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강원여성은 남성 보다 낮은 10명 중 7명(74.8%)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해 긴급상황 시 행동요령 인지율에 관한 성별 차이 를 확인함.

| 그림3 | 강원여성의 긴급상황 신고 전화번호, 행동요령 인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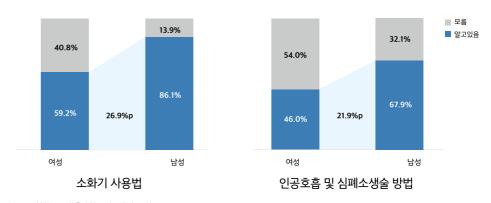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8), 「사회조사」 강원도 자료.

또한 '소화기 사용법'을 묻는 질문에 강원여성 59.2%만이 알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강원남성 86.1% 에 비해 26.9%p 낮은 수치임. 마지막으로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방법'을 묻는 질문에도 강원여성은 2명 중 1명(46%)만이 알고 있다고 답해 강원남성 67.9% 보다 21.9%p 낮게 나타남

□리4 □ 강원여성의 소화기 사용법, 인공호흡·심폐소생술 인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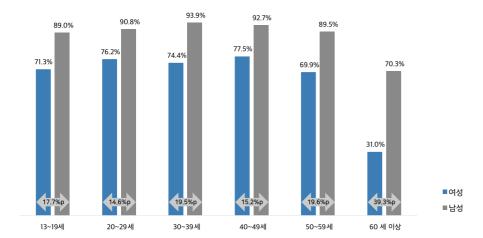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8), 「사회조사」 강원도 자료

강원여성과 남성 간 인지율 격차가 가장 큰 '소화기 사용법'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60세 이상 강원여성의 '소화기 사용법' 인지율은 31%로 강원남성(70.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강원여성의 '소화기 사용법'인지율은 13~59세까지 약 70%대를 유지하였으나 60세 이상은 31%로 급격히 낮아짐. 반면 남성은 13~59세까지 약 90% 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60세 이상에서 70.3%로 하락하는 특징을 보임.

#### |그림5| 강원여성의 연령별 소화기 사용법 인지율 현황



자료 통계청(2018),「사회조사」 강원도 자료.

이처럼 여성의 재난·긴급상황 대처수준 인지율이 남성과 큰 격차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의 재 난교육이나 훈련 참여율이 남성보다 매우 낮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은 '평생 동안 1번 이상 재난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53.5%만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남성(81.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임.

여성응답자의 재난관련 교육, 훈련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 내용 등 관련 정보를 몰라서 (80.6%)', '관련 교육기관이 어디인지 몰라서(78.5%)', '받을 만한 교육과정을 몰라서(63.2%)'가 주된 이유 였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재난 교육·훈련에 참가하질 못했다는 여성(6.7%)도 남성(2.7%)보다 많았음(김동식, 2017). 또한 남성은 군대나 직장에서 재난안전교육기회가 많은 반면 여성은 낮은 경제활동, 소 득수준, 돌봄에 관한 성역할 등으로 인해 재난대응능력을 갖출 기회, 자원이 부족함(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2019).

재난발생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의 취약성은 증가하지만 여성의 낮은 재난대응역량은 재난피해에 크게 노출시킴. 여성은 가족돌봄 역할로 어린이나 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수 있음. 따라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위험예방 및 대피방법 등 재난안전교육은 중요함(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2019).

#### 강원여성의 재난안전 정책제안

강원여성의 자연재해에 대한 높은 불안감과 재난·긴급상황 대처수준 현황은 강원도 재난안전정책에서의 성별특성 반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강원도 재난안전 정책개선안은 다음과 같음.

첫째, 산지가 많아 매년 산불피해 및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는 강원도민 특히, 여성의 피해 현황과 재난대응 능력, 교육 및 훈련 현황과 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특히 군인 거주민이 많은 접 경지역과 그 외 지역 간 차이, 연령 및 직업별 비교분석을 통해 강원여성의 재난안전교육의 불평등성을 확인 하고 재난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재난안전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안전체험관 확대운영이 필요함. 여성들이 직접 산불 등 화재대피, 소화기, 완강기 등을 체험하고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을 배울 수 있는 체 험프로그램 확대운영이 요구됨. 특히 광역저밀의 강원도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재난안전체험과 함께 가정 에서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요구됨.

셋째, 재난상황에서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성을 위해 강원도 내 발생빈도가 높거나 발생 시 피해가 큰 재난에 관한 기본대응법과 비축물품, 마음가짐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강원여성 재난안전매뉴얼'제작이 필요함. 앞서 서울시는 2017년 여성의 재난·재해대응소책자인 '서울여성안전설명서'를 제작·보급하였음.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이유로 안전 및 응급처치교육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여성을 위한 매뉴얼을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언어로 제작하고 주민센터, 학교, 마을회관 등에 비치하는 등 적극적인 재난대응정책이 요구됨.

## 한부모 가구의 성별 주거실태

#### 강원성인지통계 제119호 (2019. 9.)

최근 이혼, 혼외 출산 등이 늘어남에 따라 한부모가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7년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2%로 가족형태의 다양성이 심화되면서 한부모 가족의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남. 특히 미혼모·부자 가족, 조손가족 등 한부모가족 내부의 구성이 다양함에 따라 성별, 생애주기별 지원욕구를 반영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본고는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나타난 강원도 모·부자 가구의 주거실태 및 지원요구를 중심으로 한부모가족의 전반적인 주거 현황 및 요구에서의 성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함.

####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한부모 가구의 특성

2018년 「전국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부모가구는 전체 조사대상 2500가구 중 97가구(전체의 3.88%)이며 이중 모자가구는 61.9%, 부자가구는 38.1%를 차지함. 가구구성의 특성을 보면, '본인과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의 비율이 모자가구의 경우에는 전체의 90%(54가구), 부자가구의 경우에는 64.9%(24가구)로 나타남. '본인+자녀+조부모'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은 부자가구가 35.1%로 모자가구(8.3%)보다 크게 높음.

□표1□강원도 한부모가구의 일반적 특성

단위 : 가구, %

|         | 일반특성           | 모자 | 가구   | 부자가구 |      | 전체 |      |
|---------|----------------|----|------|------|------|----|------|
|         | 걸린국경           | 가구 | 비율   | 가구   | 비율   | 가구 | 비율   |
|         | 미혼             | 4  | 6.7  | 0    | 0.0  | 4  | 4.1  |
|         | 이혼             | 38 | 63.3 | 28   | 75.7 | 66 | 68.0 |
| 혼인형태    | 사별             | 15 | 25.0 | 7    | 18.9 | 22 | 22.7 |
|         | 별거             | 3  | 5.0  | 1    | 2.7  | 4  | 4.1  |
|         | 기타             | 0  | 0.0  | 1    | 2.7  | 1  | 1.0  |
|         | 본인+자녀          | 54 | 90.0 | 24   | 64.9 | 78 | 80.4 |
| 가구구성    | 본인+자녀+본인의 형제자매 | 1  | 1.7  | 0    | 0.0  | 1  | 1.0  |
|         | 본인+자녀+조부모      | 5  | 8,3  | 13   | 35.1 | 18 | 18.6 |
|         | 100만원 미만       | 7  | 15.6 | 0    | 0.0  | 7  | 9.5  |
| 717 1 = | 100~200만원      | 26 | 57.8 | 11   | 37.9 | 37 | 50.0 |
| 가구소득    | 200만원 이상       | 8  | 17.8 | 9    | 31.0 | 17 | 22.9 |
|         | 300만원 이상       | 4  | 8.9  | 9    | 31.0 | 13 | 17.6 |

출처 여성가족부, 20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부모가구의 혼인형태별 특성을 보면, 이혼이 68%로 한부모가구 형성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는데 부자가구(75.7%)가 모자가구(63.3%)보다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가구소득비율에서 모자가구가 100~200만원 비율이 57.8%(26가구), 100만원 미만 15.6%(7가구)로 저소득비중이 높아 부자가구에 비해경제적 어려움이 더 클 것을 예상할 수 있음.

#### 한부모 가구의 거주 및 주택 형태

한부모가구의 거주형태는 모·부자가구 모두 '보증금 있는 월세' > '자가' > '무상으로 가족, 친지집' > '공공임대주택' 순으로 나타남. 모·부자 가구 모두 '보증금이 있는 월세'거주 비중이 높게 나타나 주거불안과 주거비부담이 높은 상태일 것으로 추정됨. 모자가구의 경우 자가 거주비율이 18.3%로 부자가구 27.0%에 비해낮게 나타나 주거비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부자가구의 경우 '무상으로 가족, 친지집에서 거주' 비중이 16.2%로 모자가구의 10.0%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본인+자녀+조부모'로 구성된 가구특성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한부모가구의 주택형태는 '아파트' > '단독주택' > '연립·다세대' 순이고, 아파트 거주비율은 전체의 51.5%를 차지함.

□표2□한부모가구 주거형태

단위: 가구. %

|    |                            |    |      | 닌귀 . 기구, % |      |    |      |
|----|----------------------------|----|------|------------|------|----|------|
|    | 조기셨다                       | 모자 | 가구   | 부자         | 가구   | 전  | 체    |
|    | 주거형태                       | 가구 | 비율   | 가구         | 비율   | 가구 | 비율   |
|    | 자가                         | 11 | 18.3 | 10         | 27.0 | 21 | 21.6 |
|    | 전세                         | 6  | 10.0 | 2          | 5.4  | 8  | 8.2  |
|    | 보증금 있는 월세                  | 23 | 38.3 | 14         | 37.8 | 37 | 38.1 |
| 거주 | 보증금 없는 월세 또는 사글세           | 5  | 8.3  | 1          | 2.7  | 6  | 6.2  |
| 형태 | 무상으로 가족, 친지집에서             | 6  | 10.0 | 6          | 16.2 | 12 | 12.4 |
|    | 무상으로 친구집에서                 | 0  | 0.0  | 0          | 0.0  | 0  | 0.0  |
|    | 공공임대(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 8  | 13.3 | 3          | 8.1  | 11 | 11.3 |
|    | 기타                         | 1  | 1.7  | 1          | 2.7  | 2  | 2.1  |
|    | 단독주택(일반, 다가구, 영업겸용)        | 15 | 25.0 | 9          | 24.3 | 24 | 24.7 |
|    | 아파트 (주거전용, 주상복합)           | 32 | 53.3 | 18         | 48.6 | 50 | 51.5 |
| 주택 | 연립주택/다세대주택                 | 12 | 20.0 | 8          | 21.6 | 20 | 20.6 |
| 형태 |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 1  | 1.7  | 2          | 5.4  | 3  | 3.1  |
|    | 오피스텔                       | 0  | 0.0  | 0          | 0.0  | 0  | 0.0  |
|    | 기타                         | 0  | 0.0  | 0          | 0.0  | 0  | 0.0  |
|    |                            |    |      |            |      |    |      |

#### 한부모 가족의 주거지원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 현황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및 인지도를 살펴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보호시설, 자립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이용자는 없으며 '제도를 알지 못한다'는 비율이 60.8%로 나타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전에 이용한 적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모자가구가 8.3%로 부자가구보다 높으며, 제도인지율도 모자가구가 45%로 부자가구에 비해 31.5%p 높게 나타남.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주택제공이나 전세자금 융자지원 및 월임대료 보조 등 주거비 지원 두 항목에서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자가구보다 부자가구에서 높게 나타남. 이러한 인지도의 차이는 부자가구는 자산 및 소득분위가 전제된 공공임대및 주거비 지원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가 모자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데서 기인하는 부분이며, 실제제도를 알고 있으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가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제도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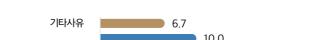
□표3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서비스 수혜경험 및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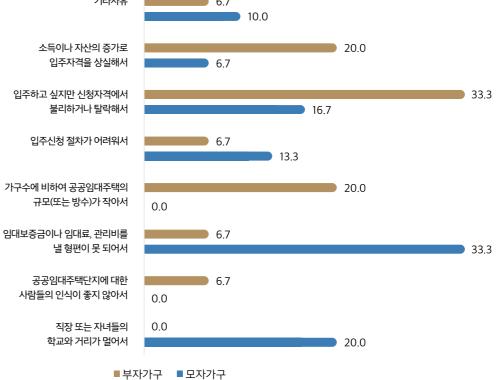
단위 : 가구. %

|   |       |      |    |      | 단위 : 가구 |      |  |
|---|-------|------|----|------|---------|------|--|
| * - 1 T   O   L   L   L   L   L   L   L   L   L | 모자    | 가구   | 부지 | 가구   | 전       | 체    |  |
| 주거지원서비스   | 가구    | 비율   | 가구 | 비율   | 가구      | 비율   |  |
|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보호시설, 자립시설, 공동                 | 동생활가정 | 등)   |    |      |         |      |  |
| 현재 받고 있음  | 0     | 0.0  | 0  | 0.0  | 0       | 0.0  |  |
| 현재는 받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                              | 5     | 8.3  | 1  | 2.7  | 6       | 6.2  |  |
|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은 없음                             | 27    | 45.0 | 5  | 13.5 | 32      | 32.9 |  |
| 제도를 알지 못함                                       | 28    | 46.7 | 31 | 83.8 | 59      | 60.8 |  |
| 2.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주택제공                             |       |      |    |      |         |      |  |
| 현재 받고 있음  | 11    | 18.3 | 5  | 13.5 | 16      | 16.5 |  |
| 현재는 받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                              | 2     | 3.3  | 1  | 2.7  | 3       | 3.1  |  |
|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은 없음                             | 28    | 46.7 | 14 | 37.8 | 42      | 43.3 |  |
| 제도를 알지 못함                                       | 19    | 31.7 | 17 | 45.9 | 36      | 37.1 |  |
| 3. 주거비 지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월임대료 보조)                  |       |      |    |      |         |      |  |
| 현재 받고 있음  | 17    | 28.3 | 9  | 24.3 | 26      | 26.8 |  |
| 현재는 받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                              | 2     | 3.3  | 1  | 2.7  | 3       | 3.1  |  |
|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은 없음                             | 22    | 36.7 | 11 | 29.7 | 33      | 33.0 |  |
| 제도를 알지 못함                                       | 19    | 31.7 | 16 | 43.2 | 35      | 36.1 |  |
|   |       |      |    |      |         |      |  |

공공임대주택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1순위)를 살펴보면, 모자가구는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관리비를 낼 형편이 못되어서'라는 경제적 이유가 33.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직장 또는 자녀들의 학교와 거리가 멀어서'(20.0%)인 반면, 부자가구는 '입주하고 싶지만 신청자격에서 불리하거나 탈락해서'(33.3%)가 가장 높고 '소득이나 자산의 증가로 입주자격을 상실'(20.0%)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또는 방수)가 작아서'(20.0%)의 순이어서 서비스 이용시 경제적인 이유가 성별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1 |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1순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의 기반이 되는 거주형태 및 주거지원서비스 이용 실태는 가족구성 및 소득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며, 특히 모자가구와 부자가구의 경제적 조건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모자가구의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실질적인 주거불안정성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음.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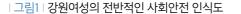
## 전더폭력 현황, 강윈도는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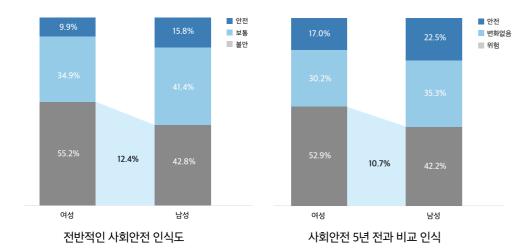
강원성인지통계 제117호 (2019. 7.)

지난 2016년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났음. 정부는 여성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지만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보도되는 젠더폭력 젠더폭력 4) 발생현황은 그 심각성을 보여줌. 강원여성의 일상생활 속 불안감과 젠더폭력 피해현황을 살펴봄.

#### 젠더폭력 현황, 강원도는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인가

2016년 강원여성은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사회안전 불안감(55.2%)을 남성보다 12.4%p 높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회안전 상태를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역시, 강원여성 2명 중 1명은 '불안'해졌다고 응답해 남성보다 10.7%p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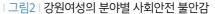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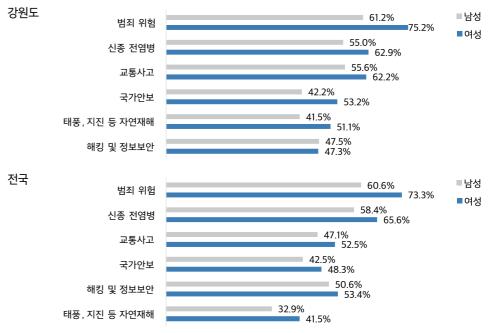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6),「사회조사」 강원도 자료.

출처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2018), 「2018 강원성인지통계」.

강원여성이 불안을 가장 느끼는 분야는 '범죄위험(75.2%)'이며 신종전염병, 교통사고, 국가안보, 자연재해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특히 강원여성의 '범죄위험'불안감은 강원남성보다 14%p, 전국여성 대비 1.9%p 높음. 또한 강원여성은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감을 강원남성과 전국보다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재난안전에 관한 성별특성 반영 필요성이 확인됐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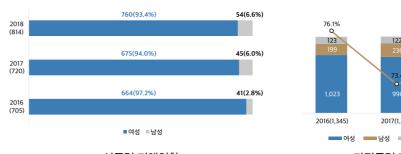


- 자료 통계청(2016),「사회조사」 강원도 자료
- 출처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2018), 「2018 강원성인지통계」

#### 강원여성의 젠더폭력 피해현황

최근 3년(2016~2018년) 강원도 내 성폭력 피해현황은 지속 증가하고 있음(2016년 705명 → 2018년 814명). 2018년 성폭력 피해자 93.4%, 가정폭력 피해자 10명 중 7명(73.4%)은 여성으로 나타났음.

□리3 □강원여성의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현황



성폭력 피해현황

가정폭력 피해현황

단위:명

자료 정보공개청구자료(2019.07.08.), 강원지방경찰청.

<sup>4)</sup> 젠더폭력은 가부장적 사회문화와 여성·남성 간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신체·정신·성적 폭행을 의미함. 젠더폭력 유형으로는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과 기술기반의 온라인 상 폭력 등을 포함함.

강원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내 불법촬영 피해는 2016년 85명에서 2017년 75명으로 소폭 감소, 2018년 97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2018년 불법촬영 피해자 85.6%가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피해장소는 아파트와 주택(16건, 17%), 목욕탕·숙박업소(15건, 16%), 학교(8건, 8%)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그림4 □ 강원여성의 불법촬영 피해현황 및 장소



자료 정보공개청구자료(2019.07.08.), 강원지방경찰청.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의 데이트폭력 상담건수 및 상담비율은 2018년 470건, 3.4%으로 2016년 (227건, 1.3%) 대비 2배 증가했음. 한편 2018년 강원지방경찰청 데이트폭력 검거건수는 353건으로 2016년 239건, 2017년 335건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음.

│그림5│강원여성의 데이트폭력 상담건수·비중 및 검거건수



자료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 상담통계. 정보공개청구자료(2019.07.08.), 강원지방경찰청. ※ 2016년 검거건수는 '16.2.3.부터 수치

#### 강원도 여성안전 정책제안

강원여성의 높은 사회안전 불안감과 젠더폭력 피해현황은 강원도 안전정책에서의 성별특성 반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젠더폭력 예방 및 상담, 현장출동, 단속과정에서의 적극적 조치는 여성의 사회적·물리적취약성을 극복하고 젠더폭력이 반드시 없어져야할 범죄행위로 인식할 수 있게 할 것임. 나아가 친밀한 관계에서의 젠더폭력은 피해자 당사자가 신고하기까지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협조와 성인지감수성,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는 여성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임.

## <sup>10</sup> 경력단절여성의 현황과 특성

강원성인지통계 제116호 (2019. 6.)

2018년 강원도 거주 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56.4%), 고용률(55.5%), 실업률(1.7%)은 전국평균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고용지표와는 달리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은 2018년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본고는 이러한 배경에서 강원도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알아보고자 함.

#### 강원도내 경력단절여성의 증가 원인

2018년 강원도 15~54세 기혼여성 246,809명 가운데 경력단절여성의 수는 47,058명으로 2017년 대비 7,977명이 늘어나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9.1%로 나타나며 비취업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비율은 7.9% 증가해 54.5%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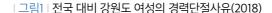
#### | 표1 | 강원도 경력단절여성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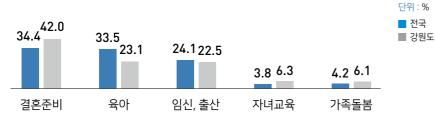
단위 : 명, %

| 연도   | 15-54세<br>기혼여성 | 경제활동<br>인구 | 취업자     | 비취업자<br>(실업자<br>+비경활) | 경력단절<br>여성 1) | 기혼여성 대비<br>경력단절여성<br>비율 2) | 비취업<br>기혼여성 대비<br>경력단절여성<br>비율 3) |
|------|----------------|------------|---------|-----------------------|---------------|----------------------------|-----------------------------------|
| 2018 | 246,809        | 164,411    | 160,504 | 86,305                | 47,058        | 19.1                       | 54.5                              |
| 2017 | 238,282        | 158,403    | 155,491 | 82,790                | 39,081        | 16.4                       | 47.2                              |
| 2016 | 248,152        | 161,090    | 157,144 | 91,008                | 43,072        | 17.4                       | 47.3                              |

- 주 1) 경력단절여성: 비취업자 중 15~54세 기혼여성이면서 결혼, 임신 및 출산, 자녀교육(초등학생), 가족돌봄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 2)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비율 = 경력단절여성/15세-54세 기혼여성\*100 3) 비취업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율 = 경력단절여성/15-54세 비취업 기혼여성\*100
- 출처 각년도 지역별고용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이러한 경력단절여성수의 증가는 고용시장에서 겪는 여성의 구직활동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동시에 고 용안정을 위한 모성보호 및 일·생활균형 제도이용의 제약이 큰 영세기업 비중이 높은 강원도의 현실을 반영 함. 또한 2018년 전국의 경력단절사유는 결혼(34.4%)> 육아(33.5%)> 임신·출산(24.1%) 순으로 나타나는 데 비해 강원도의 경력단절사유는 결혼(42%)> 육아(23.1%)> 임신,출산(22.5%)순으로 나타나 결혼을 이유 로 경력단절을 겪는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부가조사). 2018. 원자료 분석

#### 경력단절여성은 누구인가

비취업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연령별, 학력별로 살펴보면, 25~29세 78.1%, 30~34세 76.2%, 35~39세 72.0%로 20~30대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나며, 학력 특성을 보면 대졸이상 65.9%, 고졸 47.1%, 중졸 34.2% 순으로 나타나 대졸이상 20~30대 고학력층을 중심으로 경력단절이 형성 됨을 알 수 있음.

☐ Ⅲ2 ☐ 강원도 연령·학력별 경력단절 여성 현황(2018)

단위:명.%

|        |            |                      | 닌뒤 . 명, %                |  |
|--------|------------|----------------------|--------------------------|--|
| 구분     | 경력단절<br>여성 | 기혼여성 대비<br>경력단절여성 비율 | 비취업 기혼여성 대비<br>경력단절여성 비율 |  |
| 전체     | 47,058     | 19.1                 | 54.5                     |  |
| 15-19세 | -          | -                    | -                        |  |
| 20-24세 | 889        | 28.2                 | 63.9                     |  |
| 25-29세 | 4,669      | 32.1                 | 78.1                     |  |
| 30-34세 | 11,257     | 40.0                 | 76.2                     |  |
| 35-39세 | 11,219     | 27.6                 | 72.0                     |  |
| 40-44세 | 8,894      | 18.8                 | 53.2                     |  |
| 45-49세 | 6,243      | 10.8                 | 36.3                     |  |
| 50-54세 | 3,887      | 7.0                  | 26.5                     |  |
| 초졸이하   | 686        | 9.2                  | 28.0                     |  |
| 중졸     | 1,448      | 11.0                 | 34.2                     |  |
| 고졸     | 18,959     | 16.3                 | 47.1                     |  |
| 대졸이상   | 25,965     | 23.6                 | 65.9                     |  |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부가조사) 원자료분석.

#### 강원여성의 경력단절 기간 및 취업지원 방안

2018년 전국 대비 강원도 여성의 경력단절기간을 살펴보면, 5~10년 미만이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10~20년 미만이 20.8%, 1~3년 미만이 17.2%, 3~5년 미만 16.8% 순으로 나타남. 전국보다 강원도는 1~3년 미만의 경력단절기간 비율이 5.0% 많고, 10~20년 미만의 장기간 경력단절의 비율이 4.7% 적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어 초기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지원과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표3 □전국 대비 강원도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기간

단위: 명,%

|            | 전                 | 국     | 강원     | 도     |
|------------|-------------------|-------|--------|-------|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경력단절 여성 전체 | 1,846,492         | 100.0 | 47,058 | 100.0 |
| 1년 미만      | 195,128           | 10.6  | 5,301  | 11.3  |
| 1-3년 미만    | 243,203           | 13.2  | 8,088  | 17.2  |
| 3-5년 미만    | 276,753           | 15.0  | 7,890  | 16.8  |
| 5-10년 미만   | 455,475           | 24.7  | 11,508 | 24.5  |
| 10-20년 미만  | 10-20년 미만 471,405 |       | 9,771  | 20.8  |
| 20년 이상     | 204,528           | 11.1  | 4,500  | 9.6   |

게다가 강원도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희망 여부를 묻는 질문에 '희망'한다는 응답자가 6.9%로 전 년 대비 취업의지가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구직의욕을 고취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구직지원활동의 강화뿐만이 아니라 결혼 및 입직 초기의 여성들이 고용 유지를 지원할 실효성 있는 경력단절여성예방사업 및 일·생활 균 형 지원정책 마련이 요구됨.

# 여성 비정규직의 규모와 일자리의 질

강원성인지통계 제114호 (2019. 4.)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는 고용에서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왔음. 하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경우 모성보호, 성차별, 임금불평등,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본고에서는 여성노동권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 하는 도내 비정규직 여성의 규모와 일자리 특성을 간략하게 분석함.

#### 비정규직의 성별 구성 및 규모

지역수준에 경제활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근로기간을 계약한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하고 규모를 추정하였음 본고에서는 정형옥(2018)의 연구설계에서 활용한 비정규직 규모 추정 방법을 활용하였음 1).

도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여성은 130천 명이며, 이는 전체 여성 근로자의 49.7%이고, 정규직 남성은 182천명이며, 이는 전체 남성 근로자의 64.0%임.

□ 표기 강원도 임금근로자 중 계약여부에 따른 성별 종사상 지위(2018)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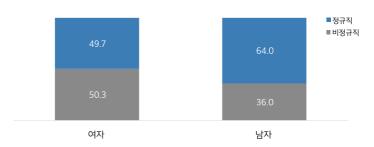
|    | 구분         | 근로기간      | 전체         |             |
|----|------------|-----------|------------|-------------|
|    | 一          | 정하였음      |            |             |
|    | 상용근로자      | 20 (7.7)  | 130 (49.7) | 150 (57.4)  |
| 여성 | 임시 · 일용근로자 | 50 (19.1) | 61 (23.5)  | 111 (42.6)  |
|    | 전체         | 70 (26.9) | 191 (73.1) | 261 (100)   |
|    | 상용근로자      | 20 (7.0)  | 182 (64.0) | 202 (71.0)  |
| 남성 | 임시 · 일용근로자 | 31 (11.0) | 51 (18.0)  | 83 (29.0)   |
|    | 전체         | 51 (18.0) | 233 (82.0) | 285 (100.0) |

주: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100 혹은 1,000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8년 상반기 원자료 분석

동일한 기준으로 강원도 비정규직 여성 비율은 타 시·도와 비교하면, 강원도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50.3% 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비정규직 여성 비율이 높음. 비정규직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 북도(56.7%), 제주도(52.2%)임.

□그림1 □강원도 비정규직 비율(2018)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8년 상반기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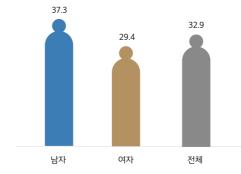
□ 그림2 □ 강원도 시도별 여성 비정규직 비율(2018)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8년 상반기 원자료 분석

#### 여성 비정규직의 규모와 일자리의 질

그림3 | 강원도 비정규직 성별 근로시간(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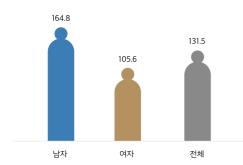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8년 상반기 원자료 분석

강원도 비정규직 여성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29.4시 간이고, 비정규직 남성은 37.3시간으로 여성이 남성보 다 7.8시간 근로시간이 짧음.

성별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을 비교하면, 여성은 105.6만원, 남성은 164.8만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59.2 만원 임금이 적음. 평균 근로시간과 대비해 볼 때, 여성의 근로시간은 남성의 79.0% 정도인 것에 비해 임금은 남 성의 59.2%에 불과함.

<sup>1)</sup> 본고에서는 정형옥(2018)의 연구설계에서 활용한 비정규직 규모 추정 방법을 활용하였음. 국내에서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할 때 통계 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주로 활용하나 이는 지역수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한계를 가짐. 따라서 지역수준의 분석이 가능한 지역별고용조사의 종사상 지위(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와 근로기간 계약여부(정하였음, 정하지 않았음)를 활용 하여 근로기간 계약이 없는 상용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그 외 근로기간 있는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함. 비정규직 개념화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보고서에 기술됨. 정형옥(2018), 「경기도 비정규직 여성노동 특성과 정책과제」, 경기도가족여성족여성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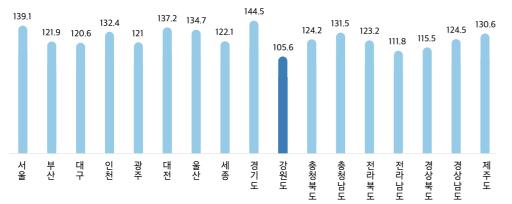
#### □그림4 □ 강원도 비정규직 월평균임금(2018)



비정규직 여성의 월평균 임금을 시도별로 비교하면, 강원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월 평균임금이 가장 낮음. 비정규직 여성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경기도와 비교하면, 강원도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이 경기도 비정규직 여성보다 38.9만원 적음.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8년 상반기 원자료 분석

#### □그림5□시도별 여성 비정규직 월평균임금(2018)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8년 상반기 원자료 분석

종합하면, 도내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여성 근로자의 50.3%이며, 남성 비정규직 비율보다 14.3% 높음. 또한 이 비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수치임.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과 임금을 살펴보면, 도내 여성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남성 비정규직보다 주 7.8시간 짧고, 임금은 남성대비 59.2%에 불과함.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는 제도적으로 마련된 여성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존재함. 강원도는 비정규직 여성의 비율이 높고, 임금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만큼 도내 여성비정규직의 근로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여성 비정규직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함.

## <sup>12</sup> 노인 이동권의 성별 차이

#### 강원성인지통계 제111호 (2019. 1.)

노인들에게 주된 생활시설과의 공간적 거리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 거주지역의 생활환경이 고령친화적인지 여부에 따라 노후생활의 활력이 증진 또는 저하될 수 있음(정경희 외, 2017). 이번 성인지통계에서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분석하여 시·도별 노인의 거주지와 일상용품 구매장소,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보건의료기관과의 도보 이동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의 이동권과 관련된 지표의 성별 차이를 살펴봄.

#### 강원도 노인의 주요 생활시설에 대한 도보 접근성

강원도는 일상용품 구매장소,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보건의료기관 등 주요 생활시설의 도보 이동 시간이 대체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도보 이동시간이 30분 이상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전국과 강원도 모두 노인복지관과 노인회관임. 일상용품 구매장소가 주거지에서 도보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비율이 강원도는 전국평균보다 11.7%p 높고, 주민센터는 20.4%p, 보건의료기관은 25.6%p나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1 □노인(65세 이상)의 주요 생활시설의 도보 이동시간

단위 : %

| 지역   | 주요 생활시설    | 5분 미만 | 5분~10분 | 10분~30분 | 30분 이상 | 계     |
|------|------------|-------|--------|---------|--------|-------|
|      | 일상용품 구매장소  | 32.9  | 38.7   | 14.3    | 14.1   | 100.0 |
| 전국   | 주민센터       | 7.5   | 31.1   | 36.4    | 25     | 100.0 |
| 선독   | 노인복지관/노인회관 | 3.3   | 9.2    | 31.6    | 55.9   | 100.0 |
|      | 보건의료기관     | 10.6  | 34     | 33      | 22.4   | 100.0 |
|      | 일상용품 구매장소  | 21.7  | 36.3   | 16.3    | 25.8   | 100.0 |
| 7101 | 주민센터       | 7.5   | 17.9   | 29.1    | 45.4   | 100.0 |
| 강원   | 노인복지관/노인회관 | 1.3   | 4      | 18.8    | 75.9   | 100.0 |
|      | 보건의료기관     | 3.7   | 22.1   | 26.2    | 48     | 100.0 |

특히 노인들의 건강과 관련된 보건의료기관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거주지와 도보이동시간이 30분 이상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표2 □ 시·도별 노인의 보건의료기관 도보 이동거리 순위(30분 이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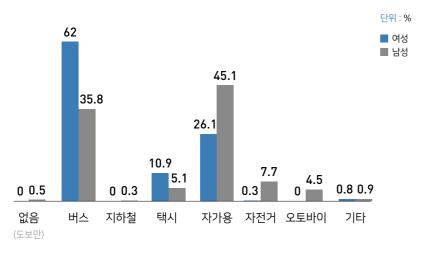
|   | 지<br>역 | 강<br>원 | 충<br>남 | 제<br>주 | 충<br>북 | 경<br>북 | 전<br>북 | 전<br>남 | 경<br>기 | 경<br>남 | 울<br>산 | 광<br>주 | 서<br>울 | 대<br>구 | 인<br>천 | 부<br>산 | 대<br>전 | 세<br>종 |
|---|--------|--------|--------|--------|--------|--------|--------|--------|--------|--------|--------|--------|--------|--------|--------|--------|--------|--------|
|   | 비<br>율 | 48.0   | 45.1   | 42.9   | 40.9   | 35.9   | 34.6   | 33.6   | 29.6   | 21.1   | 14.2   | 10.9   | 10.0   | 10.0   | 2.1    | 1.8    | 0.0    | 0.0    |
| - | 순<br>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      | 2      | 13     | 14     | 1      | 5      |

주된 생활시설과의 공간적 거리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까운 거리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는 것임. 하지만 인구밀도가 낮은 강원도의 특성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을 계속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노인이 쉽게 필요한 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함.

#### 강원도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대도시와 달리 교통관련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서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많지 않음. 노인이 외출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성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여성노인은 버스(62.0%)가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나, 남성노인은 자가용이 4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또한 자전거, 오토바이 등 개인 이동수단의 비율도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1□강원도 노인(65세 이상)이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하지만 주 교통수단이 자가용인 비율이 여성노인도 26.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실제 여성노인이 직접 운전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강원도 65세 이상 자가운전 비율은 남성노인이 44.4%, 여성노인이 3.3%로 위의 자가용 이용비율은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자가용을 함께 이용하는 비율로 볼 수 있음.

#### □표3 □ 강원도 노인(65세 이상)의 성별 자가운전 비율

단위:%

| 성별 | 현재 한다 | 전에는 했으나,<br>지금은 하지 않는다 | 평생 한 적이 없다 |  |
|----|-------|------------------------|------------|--|
| 여성 | 3.3   | 2.6                    | 94.0       |  |
| 남성 | 44.4  | 14.9                   | 40.7       |  |

#### 노인 등 교통약자의 성별에 따른 이동권 보장 필요

일반적으로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의미함. 이러한 교통약자는 이동 제약의 범위에 따라 협의적 개념과 광의적 개념으로 구분됨. 협의의 의미로서 교통약자란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할 때 신체적 이유로 이동상의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광의의 의미로 교통약자는 이러한 신체적 교통약자 외에 경제적 혹은 사회적 이유에 의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 즉, 낙후된 소외지역의 주민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을 갖고 있음(원광희, 2012).

포괄적인 의미에서 교통약자의 개념에 교통인프라가 취약해 이동에 제약을 갖는 주민에 강원도 노인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이동권에 제약이 더욱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위한 이동권 보장 방안이 필요함. 수도권은 대중교통 선택의 폭이 넓고 특히 지하철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하는 등 무료 대중교통이 있지만, 지역에는 이러한 대중교통 무료혜택이 미비함. 따라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 지원 정책이 필요함. 특히 강원도는 보건의료기관과의 도보 이동거리가 30분 이상인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지원정책마련이 시급함.

주 본고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함. 성별 구분 통계지표는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재가공하여 분석함. 원광희, 2012, "고령화시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정책이 필요하다." 「충북 Issue & Trend』, 7호, 78~84. 정경희·오영희·이윤경·오미애·강은나·김경래 황남희·김세진·이선희·이석구·홍송희,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워킹맘 & 워킹대디의 일·가정 갈등 경험

#### 강원성인지통계 제109호 (2018. 11.)

2017년 OECD국가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759시간인데, 근로시간이 긴 국가들을 보면 멕시코 2257시간, 코스타리카 2179시간에 이어 한국이 2024시간으로 3위를 차지함. (https://stats.oecd.org/Index.aspx) 현 정부는 이러한 노동시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시간근로에 따른 낮은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에게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중임.

본 자료는 2017년 강원도 청년 일·결혼·출산조사에 나타난 초등학생 이하(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25세 ~39세의 워킹맘과 워킹대디의 일·가정 갈등경험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함1).

#### 워킹맘 · 대디의 일 · 가정 균형의 어려움

초등학생 이하(만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의 일 가정 균형은 일반적으로 연령, 학력, 소득이 높고, 노동시간이 길수록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특히 4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는 워킹대디는 '가사나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에 지각, 조퇴, 결근을 한 경험'이 9.8%인 반면 워킹맘은 23.9%를 보이고 있어 워킹 대디 보다14.1%p 높게 나타남. 초과근로를 하는 워킹맘은 워킹대디보다 일·가정 갈등을 더욱 크게 경험하 고 있어 장시간 노동은 남성보다 여성의 일·가정균형에 더 큰 갈등요인으로 작용함.

#### □ 표1 □ 가사나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에 지각, 조퇴, 결근을 함

| 단위 | : % |  |
|----|-----|--|

|    | 구분      | 그렇지 않다 | 별로<br>그렇지 않다 | 대체로<br>그렇다 | 그렇다 | 1+2  | 3+4  |
|----|---------|--------|--------------|------------|-----|------|------|
|    | 40시간 미만 | 40.7   | 40.7         | 11.1       | 7.4 | 81.5 | 18.5 |
| 여성 | 40시간 이상 | 27.6   | 47.7         | 17.8       | 6.9 | 75.3 | 24.7 |
|    | 전체      | 29.4   | 46.8         | 16.9       | 7.0 | 76.1 | 23.9 |
|    | 40시간 미만 | 50.0   | 37.5         | 12.5       | 0.0 | 87.5 | 12.5 |
| 남성 | 40시간 이상 | 43.9   | 46.4         | 6.1        | 3.6 | 90.3 | 9.7  |
|    | 전체      | 44.1   | 46.1         | 6.4        | 3.4 | 90.2 | 9.8  |

<sup>1)</sup> 이 글은 강원도 초등생이하(만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만25세~39세 연령의 기혼남녀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로, 응답자 중 맞벌이 비 율이 56.1%, 전일제 근로비율 89.4%, 주 40시간 이상 정규근로를 하는 비율은 91.4%, 3시간 미만 초과근로 비율은 61.0%로 나타남. 월소득은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구간이 41.1%로 가장 많고, 가구소득 3000만원~5000만원 미만이 52.3%로 절반 이상를 차지 함. 종사상지위는 정규직 43.2%>계약직 35.1%>자영업 19.0%, 직종은 사무종사자 36.5%, 서비스/판매종사자 25.1% 순으로 분포 하며 직장유형은 민간기업이 54.1%, 직장규모는 소기업 및 5인미만 사업자가 64.1%로 가장 많음.

또한 '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 경험' 비율도 워킹맘은 18.9%로 워킹대디(10.3%)보다 8.6%p 높 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가사 및 가족 돌봄의 주된 책임을 지는 여성이 가사 및 양육의 부 담과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직장 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됨.

□표2 □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음

단위:%

|    | 구분      | 그렇지 않다 | 별로<br>그렇지 않다 | 대체로<br>그렇다 | 그렇다  | 1+2  | 3+4  |
|----|---------|--------|--------------|------------|------|------|------|
|    | 40시간 미만 | 59.3   | 37           | 3.7        | 0    | 96.3 | 3.7  |
| 여성 | 40시간 이상 | 41.4   | 37.4         | 11.5       | 9.8  | 78.7 | 21.3 |
|    | 전체      | 43.8   | 37.3         | 10.4       | 8.5  | 81.1 | 18.9 |
|    | 40시간 미만 | 12.5   | 37.5         | 37.5       | 12.5 | 50   | 50   |
| 남성 | 40시간 이상 | 45.9   | 45.4         | 7.1        | 1.5  | 91.3 | 8.7  |
|    | 전체      | 44.6   | 45.1         | 8.3        | 2    | 89.7 | 10.3 |

#### 워킹맘 · 대디의 초과근로로 인한 시간부족 갈등

워킹맘, 워킹대디가 초과근로로 인해 '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험'은 주당 초과근로시간 이 6~10시간인 경우가 남성 37.1%, 여성 45.2%, 11시간 이상인 경우는 남성 45.8%, 여성 56.3%로 나타나 초 과근로 시간이 길수록 자녀 및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커짐을 알 수 있음.

#### □표3 □일이 많아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경험

단위 %

|    | 구분       | 그렇지 않다 | 별로<br>그렇지 않다 | 대체로<br>그렇다 | 그렇다  | 1+2  | 3+4  |
|----|----------|--------|--------------|------------|------|------|------|
|    | 3시간 미만   | 28.5   | 50.8         | 11.5       | 9.2  | 79.2 | 20.8 |
| 여성 | 3시간-5시간  | 20.8   | 62.5         | 12.5       | 4.2  | 83.3 | 16.7 |
|    | 6시간-10시간 | 29.0   | 25.8         | 38.7       | 6.5  | 54.8 | 45.2 |
|    | 11시간 이상  | 12.5   | 31.3         | 43.8       | 12.5 | 43.8 | 56.3 |
|    | 전체       | 26.4   | 46.8         | 18.4       | 8.5  | 73.1 | 26.9 |
|    | 3시간 미만   | 26.5   | 49.6         | 17.9       | 6.0  | 76.1 | 23.9 |
|    | 3시간-5시간  | 32.1   | 35.7         | 28.6       | 3.6  | 67.9 | 32.1 |
| 남성 | 6시간-10시간 | 11.4   | 51.4         | 22.9       | 14.3 | 62.9 | 37.1 |
|    | 11시간 이상  | 20.8   | 33.3         | 33.3       | 12.5 | 54.2 | 45.8 |
|    | 전체       | 24.0   | 46.1         | 22.1       | 7.8  | 70.1 | 29.9 |

#### 워킹대디의 종사상지위에 따른 시간부족 갈등

워킹대디의 갈등경험은 종사상 지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자영업 48.0%, 정규직 30.2%, 계약직 11.1% 순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영업과 정규직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가족 과 함께하는 시간부족으로 인한 갈등경험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4 □ 종사상지위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경험

단위:%

|          | 구분  | 그렇지 않다 | 별로<br>그렇지 않다 | 대체로<br>그렇다 | 그렇다 | 1+2  | 3+4  |
|----------|-----|--------|--------------|------------|-----|------|------|
|          | 자영업 | 51.9   | 33.3         | 7.4        | 7.4 | 85.2 | 14.8 |
|          | 정규직 | 26.1   | 46.4         | 21.7       | 5.8 | 72.5 | 27.5 |
| 워킹<br>맘  | 계약직 | 25.8   | 48.5         | 17.5       | 8.2 | 74.2 | 25.8 |
|          | 일용직 | 28.6   | 71.4         | 0          | 0   | 100  | 0    |
|          | 전체  | 29.4   | 46.8         | 16.9       | 7   | 76.1 | 23.9 |
|          | 자영업 | 22     | 50           | 20         | 8   | 72   | 28   |
|          | 정규직 | 12.3   | 56.6         | 23.6       | 7.5 | 68.9 | 31.1 |
| 워킹<br>대디 | 계약직 | 37.8   | 46.7         | 13.3       | 2.2 | 84.4 | 15.6 |
|          | 일용직 | 0      | 100          | 0          | 0   | 100  | 0    |
|          | 전체  | 20.1   | 53.4         | 20.1       | 6.4 | 73.5 | 26.5 |

결론적으로 일·가정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은 여성은 '가사나 자녀양육, 가족돌봄을 사유'로 일과 가정 두 영역 모두에서 갈등경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워킹 대디는 '일이 많아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부족' 과 같은 가정 영역에서의 갈등경험을 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일·가정 불균형의 성별 격차는 여성과 남성에게 요구되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함. 워킹대디 는 가족의 주된 소득원으로서의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데 반해 워킹맘은 가족의 보조 소득원으로서 가사 양육 및 돌봄의 책임자로 간주되는 성불평등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임, 따라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성 평등한 돌봄부담이 가능하고 고용 및 가족 영역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일·가정 균형을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함.

## 공평한 가사분담, 견해와 현실의 차이

강원성인지통계 제107호 (2018. 9.)

추석기간 개인의 경험은 가족관계 내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미혼여성에게 추석은 휴일이 될 수도 있지만, 기혼여성에게 추석은 설거지옥(설거지와 지옥을 합친 말, 명절 스트레스와 시집살이를 나타내는 신 조어)의 다른 말이 되기도 함. 추석연휴를 앞두고, 도내 청년층의 가부장적 문화,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및 현 실에 대해 살펴보았음. 이 결과는 「강원도 청년 일·결혼·출산조사」(민소담 외, 2017)의 자료와 「사회조사」(통 계청. 2016) 자료를 근거로 함.

※「강원도 청년 일·결혼·출산조사」는 강원도 만 25세~만 39세 성인 남녀 1,26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임.

#### 시댁우선? 친정우선?

명절에 시댁에 먼저가고 친정에 가는 관행은 매년 명절에 남녀 갈등 요인으로 언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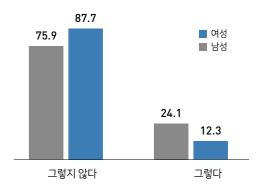
"여성 의원들의 한숨 '친정 먼저 가면 안되나요", 한국일보. 2018.02.15.

"며느리'로의 첫 명절, 나는 시댁 소속이 아닙니다" 오마이뉴스, 2017.10.01

"시댁 먼저? 처가 먼저? 명절 갈등으로 가족관계 금간다", MBC 뉴스, 2014.09.09.

|그림1 | 친정과 시집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집을 먼저 도와야한다

실제 명절에 대한 질문은 아니지만, 유사 한 상황에 대한 조사 자료를 살펴봄. 도내 미 혼 청년에게 "결혼 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하나?"라고 질문한 결과, 남성은 24.1%, 여성은 12.3%가 그렇다고 응답해 여 성과 남성의 견해 차이가 2배에 가까운 것으 로 나타났음.



자료 민소담 외, 2017, 「강원도 청년 일·결혼·출산조사」

도내 미혼 여성들은 이렇게 결혼을 통한 가족관계에서 오는 의무와 역할을 결혼 결정에 가장 큰 장애 요인 으로 꼽고 있음. 반면 미혼 남성들은 주택마련을 결혼 결정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응답함. 이렇게 남성이 결혼시 집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은 가사일을 전담해야 한다' 등과 같은 가부장적 성별분업 문화가 결혼의 장 애가 되는 것으로 보임. 도내 미혼여성의 39.4%가 '가족관계에서 오는 각종 의무와 역할 부담' 이 결혼결정에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함. 동일 응답의 남녀 응답률의 차이는 16.1%이임.

#### | <u>표</u>1 | 사회, 제도적으로 본인에게 있어 결혼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1+2순위)

단위:%

| 7 | 분      | 주택<br>마련<br>문제 | 집을<br>제외한<br>결혼<br>자금의<br>부족 | 가족관계<br>에서 오는<br>각종<br>의무와<br>역할부담 | 일자리<br>불안정<br>(실업,<br>비정규<br>직 등) | 출산/<br>육아로<br>인한<br>직장 불<br>이익<br>및 지속<br>어려움 | 생활비<br>등을<br>충당하<br>기에<br>소득<br>불충분 | 사회<br>통념상<br>적령기가<br>아니어서 | 부모와<br>동거<br>및<br>부양<br>문제 | 결혼<br>의사<br>없음 | 학업 중<br>이어서 |
|---|--------|----------------|------------------------------|------------------------------------|-----------------------------------|---|-------------------------------------|---------------------------|----------------------------|----------------|-------------|
| 성 | 남<br>성 | 64.0           | 38.3                         | 23.3                               | 25.0                              | 9.6   | 15.4                                | 6.3                       | 4.0                        | 4.4            | 3.3         |
| 별 | 여<br>성 | 35.2           | 36.5                         | 39.4                               | 14.1                              | 38.2  | 11.1                                | 5.9                       | 8.6                        | 2.6            | 3.0         |

자료 민소담 외, 2017, 「강원도 청년 일·결혼·출산조사」

#### 가사분담 이상은 평등, 현실은 불평등

20~39세 여성의 가족 내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0%임. 그러나 실제 기혼여성의 가사분담 실태는 이러한 견해와 다름.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부인이 전적으 로 책임'한다는 응답이 20~29세는 28.9%, 30~39세는 16.7%로 나타남. 또한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가사분담 실태는 '부인이 주로 하지 만 남편도 분담'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표2 □ 도내 청년층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와 실태

단위:%

| 구분       |        | 부인이<br>전적으로 책임 | 부인이 주로<br>하지만 남편도<br>분담 | 공평하게<br>분담 | 남편이 주로<br>하지만 부인도<br>분담 | 남편이<br>전적으로 책임 |     |
|----------|--------|----------------|-------------------------|------------|-------------------------|----------------|-----|
|          | 20~29세 |                | 1.1                     | 28.8       | 69.8                    | 0.0            | 0.3 |
| 겸해       | 남성     | 30~39세         | 5.7                     | 35.1       | 56.2                    | 3.0            | 0.0 |
| 12에      | σн     | 20~29세         | 0.0                     | 24.3       | 74.5                    | 1.2            | 0.0 |
|          | 여성     | 30~39세         | 0.0                     | 35.1       | 64.9                    | 0.0            | 0.0 |
| A I E II | 기혼     | 20~29세         | 28.9                    | 52.9       | 18.3                    | 0.0            | 0.0 |
| 실태 여성    | 30~39세 | 16.7           | 51.0                    | 28.7       | 3.5                     | 0.0            |     |

자료 통계청, 2016, 「사회조사」

가사분담의 견해에 대한 조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은 높지만, 현 실에서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음.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혼에게 명절 스트레스 1위는 어 른들의 잔소리이고, 잔소리 내용은 주로 '결혼안하니?'라고 함.\* 미혼 여성의 결혼 결정에 가장 큰 장애 요인 이 '가족관계에서 오는 각종 의무와 부담'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미혼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공평한 가사분담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지방선거 당선자 성별 현황과 강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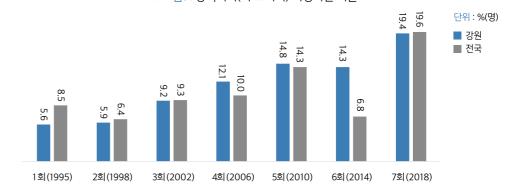
강원성인지통계 제104호 (2018. 6.)

최근 미투(#Me too)운동의 확산 등으로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면서 정치권력 의 남녀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할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한국 정 치의 여성참여는 그동안 할당제 도입과 여성운동을 통하여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왔음. 6월 13일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결과, 강원도는 광역의회에 9명(의원정수 46명), 기초의회에 37명(의원정수 169명)의 여성의원이 당선되어 활동하게 됨. 제6회 지방선거에 비하여 제7회 지방선거의 강원도 여성당선자 수는 6석 증가하였으나 여성의 과소대표성 문제는 여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로 나타남.

#### 역대 강원지역 지방선거 여성 당선자 추이

강원도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제1회 지방선거(1995년)에서 8.5%로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19.6%(지역구 4석, 비례대표 5석)에 이름.

|그림1|광역의회(시·도의회) 여성의원 비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년도). 「선거통계」

강원도 기초의회(시·군) 여성의원 비율은 2002년 0.5%, 2006년 4.7%로 점차 증가하다 2010년을 기점 으로 큰 증가세를 보여 2014년 22.5%, 2018년에는 21.9%(37명)로 소폭 하락함. 반면 전국 수준에서는 2018 년 기초의회에 900명(30.7%)의 여성의원이 당선되며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장벽이 낮아지 고 있음을 보여줌.

<sup>\* &</sup>quot;결혼안하니? 아들 용돔좀... 추석이 두렵다", 머니투데이. 2018.09.11

#### ☐ Ⅲ 기초의회(구·시·군의회) 여성의원 비율

단위: %(명)

|    | 1회(1995) | 2회(1998) | 3회(2002) | 4회(2006) | 5회(2010)  | 6회(2014)  | 7회(2018)  |
|----|----------|----------|----------|----------|-----------|-----------|-----------|
| 전국 | 1.6(72)  | 1.6(56)  | 2.2(77)  | 6.4(437) | 21.7(626) | 22.6(732) | 30.7(900) |
| 강원 | 0(0)     | 0(0)     | 0.5(1)   | 4.7(26)  | 18.9(32)  | 22.5(38)  | 21.9(3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년도). 「선거통계」

#### 자치단체장 진입은 여전히 높은 장벽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성정치인의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치뤄진 7번의 지방선거에서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당선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강원도는 역 대 광역자지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여성이 입후보한 적이 없어 여전히 여성이 단체장에 도전하 기 어려운 지역 정치 환경을 보여줌.

□표2 □ 기초단체장 여성 후보자 비율

단위: %(명)

|    | 1회(1995) | 2회(1998) | 3회(2002) | 4회(2006) | 5회(2010) | 6회(2014) | 7회(2018) |
|----|----------|----------|----------|----------|----------|----------|----------|
| 전국 | 0.4(4)   | 1.2(8)   | 1.1(8)   | 2.7(23)  | 3.5(26)  | 5.8(40)  | 4.7(35)  |
| 강원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년도). 「선거통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성후보자와 당선자의 비율 추이를 살피면, 여성 후보자가 점차 증가하 고 있는 추세임.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여성후보자 35명(전체 후보자의 4.7%) 중 11명(전체 당선자의 4.9%)이 당선됨.

□표3 □ 기초단체장 여성 당선자 비율

단위 : %(명)

|    | 1회(1995) | 2회(1998) | 3회(2002) | 4회(2006) | 5회(2010) | 6회(2014) | 7회(2018) |
|----|----------|----------|----------|----------|----------|----------|----------|
| 전국 | 0.4(1)   | 0(0)     | 0.9(2)   | 1.3(3)   | 2.6%(6)  | 4.0(9)   | 3.5(8)   |
| 강원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년도). 「선거통계」

#### 정치참여에 있어 여성의 과소대표화

대의민주주의에서 의회 구성의 대표성과 비례성은 핵심 가치임. 강원도 유권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은 정치참여에 있어 여전히 과소대표 되어 있음. 남성에 집중된 정치구조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흡사 하게 여성을 비롯한 정치신인들의 정치 진입을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차단해 왔으며, 여성계는 여성의 동등 한 대표성 보장 노력을 정치권에 촉구해 옴.

제7회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의회 지역구의석 여성공천율은 강원도 7.4%, 전국 17.0%이며, 기초의회는 강원도 12.9%, 전국 22.9% 수준임. 전국적 경향과 같이 강원도는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여성의 진출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점이 보이며 여성 지역구 공천율은 전국 수준에 비해 낮게 나타남.

□표4 □ 역대 강원도 지방선거 유권자 수

단위 : %(천 명)

| 구 | 시행년  | 구시군수 | 읍면동수 | 투표구수 | 유권자 수(천명) |     |      |     |      |  |
|---|------|------|------|------|-----------|-----|------|-----|------|--|
| 분 | 시영단  | 十八正十 |      |      | 계         | 여성  | 비율   | 남성  | 비율   |  |
| 1 | 1995 | 21   | 227  | 876  | 1,049     | 530 | 50.5 | 519 | 49.5 |  |
| 2 | 1998 | 21   | 227  | 827  | 1,087     | 549 | 50.5 | 538 | 49.5 |  |
| 3 | 2002 | 18   | 188  | 738  | 1,130     | 573 | 50.7 | 557 | 49.3 |  |
| 4 | 2006 | 18   | 188  | 660  | 1,161     | 586 | 50.5 | 575 | 49.5 |  |
| 5 | 2010 | 18   | 188  | 655  | 1,190     | 600 | 50.4 | 590 | 49.6 |  |
| 6 | 2014 | 18   | 188  | 654  | 1,256     | 629 | 50.1 | 627 | 49.9 |  |
| 7 | 2018 | 18   | 188  | 660  | 1,296     | 648 | 50.0 | 648 | 50.0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년도). 「선거통계」

#### │ 표5 │ 지역구 공천 후보자 성별 구성 : 광역의회

단위: %(명)

|    |     | 전국    |       | 강원 |     |       |  |
|----|-----|-------|-------|----|-----|-------|--|
|    | 여성  | 남성    | 여성 비율 | 여성 | 남성  | 여성 비율 |  |
| 4회 | 107 | 1,955 | 5.2   | 3  | 109 | 2.7   |  |
| 5회 | 154 | 1,610 | 8.7   | 6  | 98  | 5.8   |  |
| 6회 | 198 | 1,521 | 11.5  | 9  | 90  | 9.1   |  |
| 7회 | 274 | 1,612 | 17.0  | 7  | 94  | 7.4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년도). 「선거통계」

#### □표6 □ 지역구 공천 후보자 성별 구성 : 기초의회

단위: %(명)

|    |     | 전국       |      | 강원 |     |       |  |
|----|-----|----------|------|----|-----|-------|--|
|    | 여성  | 남성 여성 비율 |      | 여성 | 남성  | 여성 비율 |  |
| 4회 | 390 | 1,955    | 4.9  | 16 | 501 | 3.1   |  |
| 5회 | 551 | 1,610    | 9.5  | 22 | 373 | 5.6   |  |
| 6회 | 757 | 1,521    | 14.1 | 32 | 318 | 9.1   |  |
| 7회 | 992 | 1,612    | 22.9 | 37 | 287 | 12.9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년도). 「선거통계」

#### 변화를 위한 임계치, 여성의원 30%

달럽(Dahlerup, 1988)에 따르면 전체 의석 중 여성의원이 30%를 차지하는 때가 여성의 목소리가 힘을 갖 게 되는 임계점이 되며, UN 여성차별위원회는 지난 2월 제8차 한국 정부 심의에서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 보 장을 위해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번 선거결과 기초의회에서 전국 수준 30% 이상의 여성의석을 달성하였으나 강원도의 경우 21.9%로 전국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 지역 내 여성인재의 발굴과 육성 지원 노력이 과제로 나타남. 또한 여성 정치대표 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외에 '성별 균형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정당과 유권자의 적극적 역할은 매우 중 요함. 어려운 장벽을 딛고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 당선된 여성 정치인들이 힘 있고 일 잘하는 소수로 거듭나 기를 기대함.

# 혼전동거 및 혼전출산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보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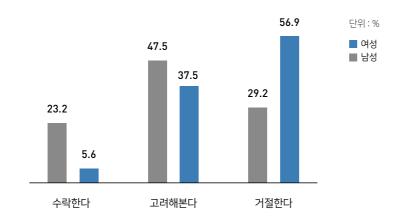
강원성인지통계 제101호 (2018. 3.)

성개방 의식 확산으로 강원도 청년들 사이에서 혼전 성관계에 대한 금기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관 찰됨.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혼전동거와 혼전출산에 관해서 강원도 청년남녀의 의식을 살펴본 결과, 부 정적 응답이 더 많으나, 긍정(고려 또는 수락)도 적지 않음. 남녀 차이를 비교하면, 여성이 훨씬 보수적인 것 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최근 조사(민소담 외. 2017. 강원도 청년 일·결혼·출산조사)를 근거로 함. (강원 도 거주 중인 25-39세 남녀 1,268명(남 620명, 여 648명) 대상. 조사기간 2017년 6월~7월)

#### 혼전동거에 대한 강원도 미혼남녀의 의식

"이성교제 상대가 혼전 동거를 제안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강원도 미혼남녀(총 604명. 남 336 명, 여 268명)에게 물음. "고려해 본다"와 "수락"이 남성은 각각 47.5%, 23.2%로 대체로 긍정적인 대답이 많은 가운데 거절은 29.2%임. 여성은 "고려"가 37.5%, "수락"이 5.6%, "거절"이 56.9%로 나타남(그림1 참조). 특히 부정응답률에서 남녀 차이가 매우 커서, 혼전동거에 대한 강원도 미혼남녀의 태도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훨씬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남.





전국의 기·미혼 남녀(20-39세)를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통계청, 2016년)에서도 혼전 동거에 대해 남성 이 여성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조금 높고, 부정적인 응답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 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표1 참조).

| <u>표</u>1 | 결혼하지 않아도 남녀가 함께 살 수 있다(전국 20-39세. 2016)

단위:%

| 성별 | · 연령별 | 계     | 전적 동의 | 약간동의 | 약간 반대 | 전적 반대 | 긍정   | 부정   |
|----|-------|-------|-------|------|-------|-------|------|------|
| 나  | 20-29 | 100.0 | 17.1  | 50.8 | 22.8  | 9.3   | 67.9 | 32.1 |
| 남  | 30-39 | 100.0 | 15.1  | 50.4 | 23.3  | 11.2  | 65.5 | 34.5 |
| ф  | 20-29 | 100.0 | 14.2  | 47.9 | 23.5  | 14.4  | 62.1 | 37.9 |
| Ч  | 30-39 | 100.0 | 12.1  | 47.2 | 26.5  | 14.3  | 59.3 | 40.8 |

출처 통계청. 2016. 사회조사

#### 강원도 청년, 혼전출산도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

"결혼하지 않고도 출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원도 기·미혼 청년남녀(25세-39세)는 전반적으로 부정 적인 응답이 더 많음. 하지만 "대체로 그렇다"나 "그렇다"는 긍정응답도 적지 않아 미혼여성 35.2%, 기혼여성 36.5%, 미혼남성 42.5%, 기혼남성의 34.5%가 이에 해당됨. 성차이를 보면, 미혼은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응 답이 많고, 기혼은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응답이 약간 많음(표2 참조).

| <u>표2</u> | 결혼하지 않아도 출산 가능(강원도 25세-39세. 2017)

단위:%

| 구  | 분  | 그렇지<br>않다 | 별로그렇지<br>않다 | 대체로<br>그렇다 | 그렇다  | 부정   | 긍정   | 계     |
|----|----|-----------|-------------|------------|------|------|------|-------|
| 미승 | 남성 | 33.7      | 23.8        | 25.8       | 16.8 | 57.5 | 42.5 | 100.0 |
| 미혼 | 여성 | 38.7      | 26.1        | 24.3       | 11.0 | 64.8 | 35.2 | 100.0 |
| 기승 | 남성 | 39.2      | 26.2        | 20.2       | 14.3 | 65.5 | 34.5 | 100.0 |
| 기혼 | 여성 | 37.0      | 26.6        | 18.8       | 17.7 | 63.5 | 36.5 | 100.0 |

2016년 전국 기·미혼 남녀(20-39세) 대상 조사는 혼전 출산에 대해 서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 응답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남(표3 참조).

| <del>표3</del> | 결혼하지 않아도 출산 가능(전국 20-39세. 2016)

단위:%

| 성별 · | 연령별   | 계     | 전적 반대 | 약간 반대 | 약간동의 | 전적 동의 | 부정   | 긍정   |
|------|-------|-------|-------|-------|------|-------|------|------|
| 나    | 20-29 | 100.0 | 28.4  | 36.8  | 26.8 | 8.0   | 65.2 | 34.8 |
| 남    | 30-39 | 100.0 | 29.5  | 35.3  | 28.1 | 7.0   | 64.8 | 35.1 |
| 여    | 20-29 | 100.0 | 34.7  | 36.5  | 21.8 | 7.1   | 71.2 | 28.9 |
| Ч    | 30-39 | 100.0 | 32.9  | 37.3  | 23.4 | 6.4   | 70.2 | 29.8 |

출처 통계청. 2016. 사회조사

혼전동거와 혼전출산에 대해 강원도 여성이 강원도 남성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남(혼전출산 에 대해서 기혼의 경우는 이와 반대이나, 남녀 차이는 작음). 이러한 경향은 전국의 사회조사(2016)에서도 유 사하게 나타남. 이는 전통적인 성규범에서 벗어남으로써 얻게 될 불명예와 불이익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여 전히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sup>17</sup> 갈 길이 먼 남성의 부성권 확보

강원성인지통계 제98호 (2017. 12.)

우리 사회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은 여전히 어렵고 낯설게 여겨진다. 「양성평등기본법」제25조에서 국가 기관, 사용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나 여성의 모성권도 지키기 어려운 현실에 남성의 부성권 확보는 갈 길이 멀음. 이에 강원도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부성권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함.

#### 강원도 유배우가구 중 절반 이상이 맞벌이가구

강원도 남성의 고용률은 70.9%로, 여성 55.3%에 비해 15.6%p 높음(2017년 10월 기준). 강원도는 맞벌이가구의 비율도 높은 편인데, 전체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가구 비율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52.4%로 유배유가구 중 절반 이상이 맞벌이를 하고 있음. 전국 평균 44.9%보다 상당히 높은 편임. 맞벌이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가사·육아에서의 남성 참여 및 사회적 지원이 더욱 필요함을 의미함.

□표1 □ 강원도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

단위 : 천가구,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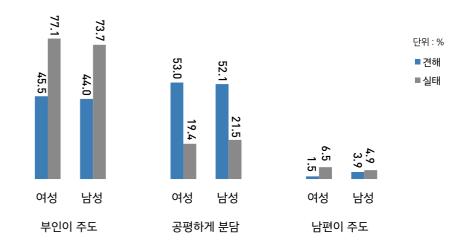
|           | 유배우 가구 | 맞벌이 가구 | 비율   | 전년대비 증감 |
|-----------|--------|--------|------|---------|
| 2011      | 367    | 171    | 46.5 | -       |
| 2012      | 370    | 174    | 47.1 | 0.6     |
| 2013.     | 371    | 174    | 47.0 | -0.1    |
| 2014.     | 373    | 183    | 49.1 | 2.1     |
| 2015      | 374    | 191    | 51.0 | 1.9     |
| 2016      | 375    | 196    | 52.4 | 1.4     |
| 전국 (2016) | 11,884 | 5,331  | 44.9 | -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https://gsis.kwdi.re.kr)

### 가사노동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천은 어려워

2016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가사분담에 대해서는 강원도 인구 2명 중 1명인 52.6%(남성 52.1%, 여성 53.0%)는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 해야 한다고 생각(견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실제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 중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 하고 있는 경우(실태)는 여성 19.4%, 남성 21.5%로 나타났음.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 것과 공평하게 '실천' 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1□강원도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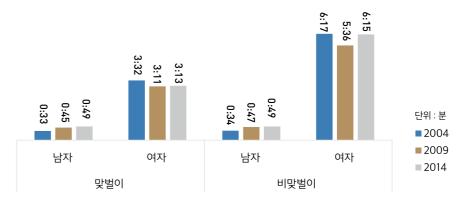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6.

\* 실태는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에서 19세 이상 '남편'과 '부인'만 응답

#### 강원도 비맞벌이 가구와 맞벌이가구 남성 가사노동시간 동일

남성의 가사노동 실태를 보며, 2014년 강원도 맞벌이가구 남성의 가사노동시간(가정관리와 가족·가구원 돌보기 시간 포함)은 49분이고, 비맞벌이가구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또한 49분임. 여성과 남성이 모두 임금노 동에 참여하는 맞벌이가구의 여성 가사노동시간(3시간 13분)은 남성(49분)보다 2시간 24분이 더 긺. 강원도 맞벌이가구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과 비맞벌이가구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동일하다는 것은 여성의 이중노 동(가사노동과 임금노동)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음.

□ 그림2 □ 강원도 맞벌이여부별 가사노동시간



자료 통계청,「생활시간조사」, 2014.

#### 남성 육아휴직자는 증가추세이고, 전국보다 높은 수준

강원도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전국에 비해 높은 편임. 2015년 강원도 육아휴직자는 1,367명이고 이중 여성이 1,261명(92.2%), 남성이 106명(7.8%)임. 전국적으로는 육아휴직자 87,339명 중 여성이 82,467명 (94.4%), 남성이 4,872명(5.6%)임. 강원도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0년 2.5%, 2011년 4.2%, 2014년 5.5%, 2015년 7.8% 등으로 증가폭이 큰 편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2014년 4.5%, 2015년 5.6%로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2 □육아휴직 성별 현황

단위 : 명, %

| <u>-</u>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 전 체   | 526    | 885    | 985    | 1,111  | 1,182  | 1,367  |
| 7101     | 여성    | 513    | 848    | 944    | 1,063  | 1,117  | 1,261  |
| 강원       | 남성    | 13     | 37     | 41     | 48     | 65     | 106    |
|          | 남성 비율 | 2.5    | 4.2    | 4.2    | 4.3    | 5.5    | 7.8    |
|          | 전 체   | 41,733 | 58,136 | 64,071 | 69,618 | 76,831 | 87,339 |
| ᅯᄀ       | 여성    | 40,914 | 56,734 | 62,281 | 67,325 | 73,410 | 82,467 |
| 전국       | 남성    | 819    | 1,402  | 1,790  | 2,293  | 3,421  | 4,872  |
|          | 남성 비율 | 2.0    | 2.4    | 2.8    | 3.3    | 4.5    | 5.6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 여성취업 장애요인 중 '육아부담'이 가장 커

여성취업의 장애요인 중 가장 높은 응답은 '육아부담'(74.1%)이었고, 여성과 남성은 각각 76.3%, 71.8% 이었음. 그 다음으로는 '가사부담'(47.4%), '불평등한 근로여건'(3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국 또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요인은 '육아부담'(71.1%)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가사부담'(41.8%), '불평등한 근로여건'(33.5%) 등의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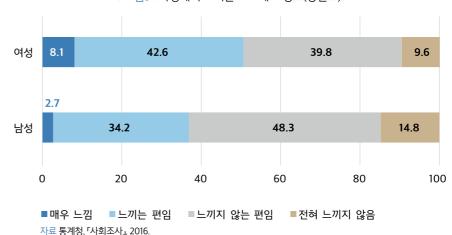
□표3 □ 여성취업 장애요인에 대한 견해(복수응답)

단위:%

|        | 성별 | 사회적<br>편견과<br>관행 | 직업의식,<br>책임감<br>부족 | 불평등한<br>근로여건 | 일에 대한<br>여성의<br>능력부족 | 구인정보<br>구하기 어<br>려움 | 육아<br>부담 | 가사<br>부담 | 기타  | 잘 모르<br>겠다 |
|--------|----|------------------|--------------------|--------------|----------------------|---------------------|----------|----------|-----|------------|
|        | 전체 | 35.5             | 11.6               | 31.0         | 5.1                  | 5.7                 | 74.1     | 47.4     | 0.2 | 7.6        |
| 강<br>원 | 여자 | 35.0             | 8.2                | 32.9         | 4.0                  | 5.4                 | 76.3     | 50.6     | 0.2 | 6.3        |
|        | 남자 | 36.0             | 15.1               | 29.0         | 6.3                  | 6.0                 | 71.8     | 44.1     | 0.2 | 9.0        |
|        | 전체 | 41.3             | 14.2               | 33.5         | 6.5                  | 4.7                 | 71.1     | 41.8     | 0.2 | 6.1        |
| 전<br>국 | 여자 | 41.1             | 10.8               | 35.5         | 5.1                  | 5.8                 | 73.8     | 45.4     | 0.1 | 4.8        |
|        | 남자 | 41.5             | 17.7               | 31.3         | 8.0                  | 3.6                 | 68.3     | 38.1     | 0.2 | 7.5        |

출처 통계청,「사회조사」, 2015.

가족 내 '독박육아' 등의 상황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음. 가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보면 강원도 남성은 36.9%가 스트레스를 느끼며(매우 느낌, 느끼는 편임 합산), 여성은 50.7%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비율이 훨씬 높음.



□그림3 □ 가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강원도)

#### 부성권 확보를 위한 사회적 노력

최근 일본에서 '후라리맨'이라는 신조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움. '후라리맨'은 아내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카페 등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남성들을 일컫는 말임. 한국에서도 '후라리맨'이 낯선 존재가 아니듯 일본에서 여성들의 '독박육 아'도 동일한 현상인 것 같음. 남성들의 제한적인 육아 참여는 이러한 문화적 현상만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남성 노동자들의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 문제이기도 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가 쉽지 않은 사회적 환경 탓도 클 것임.

육아휴직을 한 남성이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할 경우 기저귀를 교환하기도, 수유를 하기도 쉽지 않은 점이 단적인 예임. 여성가족부에서는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의 편의를 위해 문화시설, 종합병원, 공공업무시설 등의 남녀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1대 이상 설치할 것을 행정 자치부에 권고했음. 행정자치부는 11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 11월부터 현재 교통시설 화장실에만 적용하고 있는 기저귀 교환대를 여성가족부의 권고에 따라 확대하기로 했음.

부성권을 실현하도록 사회가 지지하고 있으며, 제도를 지원하고 있음. 강원도 남성의 부성권 실현, 그 길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기를 희망함.

## 2015년 인구총조사로 본 강윈도 인구와 여성가구 변화

강원성인지통계 제85호 (2016.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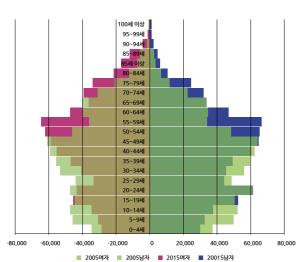
인구 구조는 빠른 추세로 변화하고 5년 주기의 인구총조사는 이러한 변화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김태헌, 2011). 이번 2015년 인구총조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현상은 1인가구가 전체 가구 유형 중 처음으로 주류 유형이 되었다는 것임. 강원도가 1인 가구 비율 전국 최고를 기록함에 따라, 본 성인지 통계에서는 2015 인구총조사 전수부문 결과를 통해 강원도 인구·가구 변화를 파악하고자 함.

#### 2015 인구총조사에서 드러나는 강원도 특성

인구밀도 90명/km'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음(서울 16,364명/km', 2005년 강원도 88명km'). 5년간 인구 감소지역으로는 동해안, 태백권(속초, 동해, 강릉, 정선, 태백)임. 고령 인구 비율 16.9% 전국 시·도 중 4위 (20% 이상 지역: 고성, 양양, 홍천, 횡성, 평창, 정선, 삼척, 영월), 시·도별 중위연령 44.2세로 3위임. 가구증 가율 8.3% 시·도 중 9위, 가구 규모(가구 수) 시 단위에서 태백시, 삼척시 최하위에 해당함. 2005년 조사 당 시 평균 가구원수 2.70명에서 2015년 평균 가구원 수 2.36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전국 시도 가운데 최하위( 전국평균 2.53명)임. 1인 가구 비율 31.2% 전국 최상위로 2005년(23.5%)에 비해 7.7%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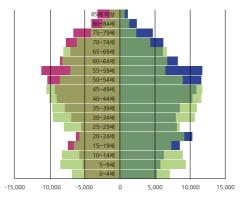
#### 청년인구 감소, 성비 불균형의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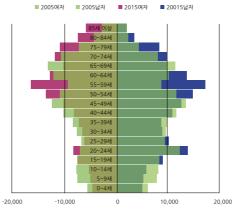


강원도 인구의 10년간 증감을 보았을 때 전체 인구는 38,964명이 증가하였고, 남성이 25,335명, 여성이 13,629명 증가함. 전체적으로는 증가추세이나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를 살펴보면 40대까지의 연령은 10년간 감소했고 50대 이후에서 증가함. 강원도 인구 증가는 중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주류 집단 연령이 상승하며 방추형을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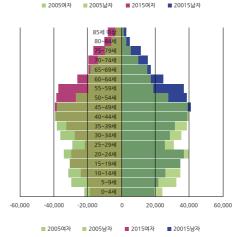
| 그림2 | 강원도 읍/면/동 인구피라미드 (2005, 2015)



강원도의 인구를 읍면동으로 비교했을 때 면부의 경 우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읍단위와 동단위에서 젊은 계층의 감소가 보임.



전반적으로 청년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적으며, 면 에서 청년 성별 인구의 차이가 가장 심각함.

| 표1 | 강원도 연령대에 따른 성비 변화(2005, 2015)

| 연<br>령      | 0<br>~<br>4 | 5<br>~<br>9 | 10<br>~<br>14 | 15<br>~<br>19 | 20<br>~<br>24 | 25<br>~<br>29 | 30<br>~<br>34 | 35<br>~<br>39 | 40<br>~<br>44 | 45<br>~<br>49 | 50<br>~<br>54 | 55<br>~<br>59 | 60<br>~<br>64 | 65<br>~<br>69 | 70<br>~<br>74 | 75<br>~<br>79 | 80<br>~<br>84 | 85세<br>이상 |
|-------------|-------------|-------------|---------------|---------------|---------------|---------------|---------------|---------------|---------------|---------------|---------------|---------------|---------------|---------------|---------------|---------------|---------------|-----------|
| 강<br>원<br>도 | -3.4        | -0.8        | -0.3          | 2.6           | 10.8          | 21.4          | 6.8           | -3.2          | 2.6           | 4.7           | 0.7           | 7             | 12.5          | 7             | 8.3           | 15.7          | -1.9          | -4.9      |
| 읍           | 1.5         | -0.1        | -1.4          | 2.1           | 6.1           | 42.8          | 2.8           | -4.2          | 1.2           | 5.8           | 7.5           | 14.1          | 12.1          | 4.5           | 7.7           | 14.4          | -5.9          | -6.5      |
| 면           | -2.8        | -1          | 2.9           | 9.7           | -2.1          | 30            | 8             | 2.4           | 22.5          | 16.5          | 1.5           | 10.8          | 24            | 12.5          | 7.7           | 16.8          | -6.6          | -9.3      |
| 동           | 5           | 1           | 0.8           | -0.9          | -10.6         | -12.3         | -6.9          | 4.2           | 0.5           | -2            | 1.1           | -3.1          | -6.3          | -5.6          | -9.4          | -15.8         | -3.3          | 0.9       |

<표 1>은 2015년도 대비 2005년도 성비의 값으로 양수는 남성 비율 증가, 음수는 여성 비율 증가를 의미함. 강 원도의 전체 성비는 2015년 102.4로 2005년의 100.8에 비해 소폭 상승함.(성비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넘으면 남성이 많고 100 이하 시 여성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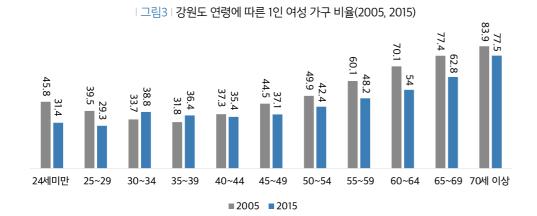
강원도 전체로 보면 20대에서 성비의 급격한 증가가 관찰됨. 하지만 행정단위로 분리해보면 동 단위에 서는 성비가 감소하고 읍·면 단위에서는 성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읍·면의 20대 여성 비율 감소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음. 60세 이후 연령은 성비가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에(여성 수명이 남성에 비해 김) 남성의 비율의 증가는 인구 이동보다 수명 연장의 영향이 큼.

#### 30대 여성 1인 가구의 증가

1990년 인구총조사 당시 전국 1인 가구의 비율은 9.0%로 주류 유형은 4인 가구였음. 이러한 경향이 2005년까지 지속되다 2010년 2인 가구, 2015년에 이르러 1인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27.2%) 가구 유형으로 집계됨. 강원도의 경우, 2015년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31.2%) 나타남.

1인 가구의 증가의 관련된 원인으로는 사회문화 수준에서는 개인화, 정보혁명, 여성지위, 신자유주의 이념 확산과 가족·인구학적으로는 만혼·비혼·이혼 증가와 수명 연장 등으로 설명됨(김연옥, 2016).

1인 가구의 특성은 빈곤화, 여성화, 노령화로 제시됨(김연옥,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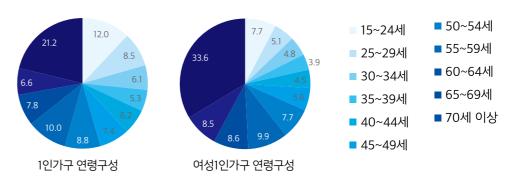


□ 표2 □ 강원도 연령에 따른 1인 가구 수와 1인 여성 가구 수(2015)

| 1인 가구 수 | 여성 1인 가구 수   |
|---------|--|
| 189,379 | 92,559   |
| 22,760  | 7,158  |
| 16,088  | 4,718  |
| 11,473  | 4,452  |
| 9,986   | 3,631  |
| 11,833  | 4,184  |
| 14,080  | 5,218  |
| 16,724  | 7,093  |
| 18,944  | 9,122  |
| 14,821  | 8,005  |
| 12,591  | 7,912  |
| 40,079  | 31,066   |
|         | 189,379 22,760 16,088 11,473 9,986 11,833 14,080 16,724 18,944 14,821 12,591 |

강원도 전체의 1인 가구 수가 122,336가구에서 189,379로 67,043가구 증가한 것에 반해 여성 1인 가구는 23,661가구 증가로 남성 1인 가구보다 증가량이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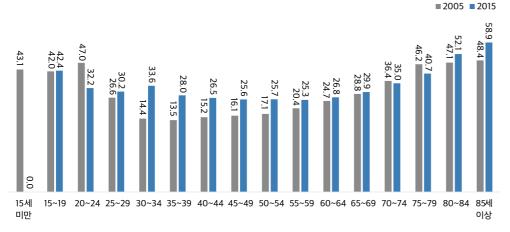
□그림4 □ 강원도 1인 가구 연령 구성비(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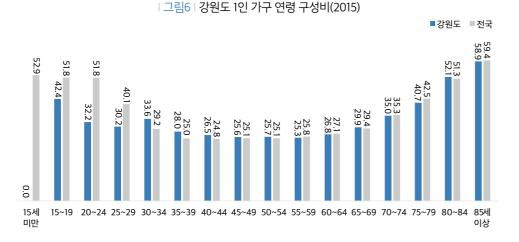
남녀 전체에서 연령으로 볼 때 1인가구의 상당수가 고령자이며(70세 이상 21.2%, 60대 14.4%) 여성 1인 가구 내에서 고령자의 비율이(70대 33.6%, 60대 17.1%) 특히 높음.

#### 청 · 장년 여성 가구주의 증가

| 그림5 | 강원도 여성 가구주의 변화(2005, 2015)



강원도 2005년 여성 가구주와 비교했을 때, 2015년에는 15세 미만의 여성 가구주는 없어졌으며 20~24 세 여성 가구주 비율이 14.8%p 감소했고, 30~44세, 85세 이상에서 10%p 이상의 가구주 비율 상승이 나타남. 2015년 강원도 여성 가구주 비율이 높은 연령대로는 15~19세, 75세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 나고 있음.



전국과 강원도의 여성 가구주를 비교했을 때 20대 여성 가구주 비율이 낮음. 강원도에서 20~24세 여성 가구주 비율이 전국보다 19.6%p나 낮고 25~29세 여성 가구주의 경우 9.9%p 낮음. 결과를 종합해보면 강 원도 여성 가구주의 증가는 3, 40대 여성과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전국과 비교했을 때 20 대 여성의 가구주 비율이 낮다고 할 수 있음.

참고문헌 김연옥. (2016). 1인 가구 시대의 도래: 특성과 생활실태. 한국가족복지학, 52, 139. 김태헌. (2011). 우리나라 인구의 규모와 구조의 변화와 특징 -2010년 인구총조사 및 2011년 장래인구전망을 중심으로. 인 구교육, 4(2), 101.

19

## 주관적 계층의식 및 사회이동의 성별 인식 차이

강원성인지통계 제83호 (2016. 9.)

주관적 계층의식이란 사회속의 나와 남을 비교하는 일종의 상대적 평가이며, 자원과 보상에 의 접근 및 할 당에 대한 배제 및 박탈감 정도를 나타냄. 이러한 주관적 계층의식의 차이는 상이한 성향 및 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음(이혜경, 1993). 사회이동 또는 계층이동은 사회 내에서 지위를 이동할 수 있거나 이 동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이며, 세대내(본인세대) 이동과 세대간(본인세대와 다음세대)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 음. 사회이동성은 사회적 동력 및 사회통합을 진단하는 지표로 강조되고 있음(여유진 외, 2015).

본고는 주관적 인식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성인지 통계(GSIS), 사회조사 7) 자료(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 를 활용해 강원여성과 남성의 계층의식과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해 비교분석하고자 함.

#### '하층'의식 가진 강원여성 비율 46.6%로, 전국 및 강원남성보다 높아

성별로 보면 전국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상층(전국남성 2.6%, 전국여성 2.0%), 중간층(전국남성 58.0%, 전국여성 56.9%)이라고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은 하층(전국남성 39.3%, 전국여성 41.1%)이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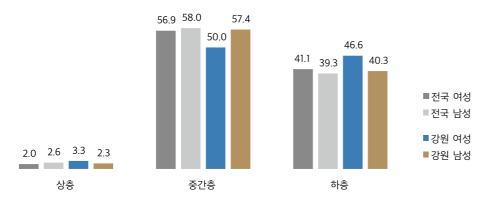
강원도의 경우 여성이 상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3%로 전국여성과 남성에 비해 높았고, 강원남성 2.3% 에 비해서도 높았음. 반면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강원여성이 50.0%로 전국여성과 남성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았고, 강원남성 57.4%에 비해서도 7.4%p 낮았음, 하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강원여성이 46.6%로 전 국여성과 남성에 비해 높았으며, 강원남성 40.3%에 비해서도 3.3% 높았음.

#### 강원여성의 계층의식, 전국 및 강원남성보다 양극단에서 높은 양상

강원여성은 전국여성, 전국남성, 강원남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 고,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가장 낮았으며,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타 집단에 비해 상층과 하층 비율이 양극단에서 높은 양상을 보임.

<sup>7)</sup> 사회조사에서 계층의식 및 사회이동을 측정하는 문항은 다음과 같음. 계층의식은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본인세대 계층이동은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 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로, 다음세대 계층이동은 "우리 사회에서 현재 본인 세대 보다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이 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로 구성됨.

#### □리1 전국 및 강원도 성별 주관적 계층의식(15세 이상, 2015년)



주: 상상+상하=상층, 중상+중하=중간층, 하상+하하=하층으로 재구분

#### 본인세대 사회경제적 지위 높아질 가능성, 강원여성과 남성 모두 부정적 인식 증가

시계열 자료를 통해 강원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본인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이동 가능성을 살펴보면, 높음(매우 높다+높은 편이다)이라는 긍정적 인식은 2009년 34.1%에서 2011년 32.1%로 줄어들었으며, 2015년에는 26.3%로 대폭 하락했음. 낮음(매우 낮다+낮은 편이다)이라는 비관적 인식은 2009년 41.4%에서, 2011년 51.3%로, 2015년 54.3%로 증가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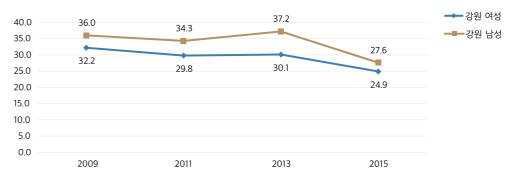
□표1 □ 강원도 여성 가구주의 변화(2005,2015)

| _    | н  | ᅰ     | LO   |     |      | 110  |      |      |      |
|------|----|-------|------|-----|------|------|------|------|------|
| 7    | 분  | 계     | 높음   | 매우  | 비교적  | 낮음   | 비교적  | 매우   | 모름   |
|      | 전체 | 100.0 | 34.1 | 2.8 | 31.3 | 41.4 | 28.7 | 12.6 | 24.7 |
| 2009 | 여성 | 100.0 | 32.2 | 2.2 | 30.0 | 40.1 | 28.0 | 12.1 | 27.7 |
|      | 남성 | 100.0 | 36.0 | 3.4 | 32.6 | 42.6 | 29.5 | 13.1 | 21.5 |
|      | 전체 | 100.0 | 32.1 | 2.5 | 29.6 | 51.3 | 38.1 | 13.2 | 16.7 |
| 2011 | 여성 | 100.0 | 29.8 | 1.3 | 28.5 | 50.9 | 39.5 | 11.4 | 19.2 |
|      | 남성 | 100.0 | 34.3 | 3.7 | 30.6 | 51.7 | 36.7 | 15.0 | 14.0 |
|      | 전체 | 100.0 | 33.7 | 3.3 | 30.3 | 50.2 | 36.8 | 13.3 | 16.3 |
| 2013 | 여성 | 100.0 | 30.1 | 2.5 | 27.6 | 49.7 | 37.0 | 12.7 | 20.2 |
|      | 남성 | 100.0 | 37.2 | 4.1 | 33.1 | 50.6 | 36.7 | 13.9 | 12.2 |
|      | 전체 | 100.0 | 26.3 | 2.1 | 24.2 | 54.3 | 38.7 | 15.5 | 19.5 |
| 2015 | 여성 | 100.0 | 24.9 | 1.4 | 23.5 | 53.0 | 37.7 | 15.3 | 22.2 |
|      | 남성 | 100.0 | 27.6 | 2.8 | 24.8 | 55.5 | 39.7 | 15.8 | 16.8 |

#### 강원여성의 본인세대 계층이동 상승 가능성, 남성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

시계열 자료를 통해 강원여성이 생각하는 본인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을 살펴보면, 높음(매우 높다+높은 편이다)이라는 긍정적 인식이 강원남성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점점 감소하는 추세임. 본인세대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강원여성은 2009년 32.2%로 강원남성 36.0%보다 낮았고, 최근 2015년에는 강원여성이 24.9%, 강원남성이 27.6%로 격차는 줄었지만 여전히 강원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계층상승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림2 | 강원도 성별 본인세대 계층이동 상승 가능성 추이(15세 이상)



주 : '매우 높다'와 '비교적 높다' 응답 비율임.

#### 다음세대 사회경제적 지위 높아질 가능성, 강원여성과 남성 모두 부정적 인식 증가

시계열 자료를 통해 강원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본인세대 보다 다음세대인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면, 높음(매우 높다+높은 편이다)이라는 긍정적 인식은 2009년 43.3%에서 최근 2015년에는 37.5%로 감소함. 낮음(매우 낮다+낮은 편이다)이라는 비관적 인식은 2009년 25.1%에서, 2011년 37.4%로 증가했고, 최근 2015년에는 41.5%로 대폭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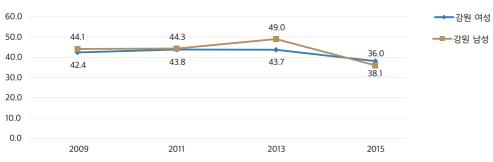
□ 표2 □ 다음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추이(15세 이상, 강원도)

| 구    | ㅂ  | 계     | 높음   |     |      | 낮음   |      |      | 모름   |
|------|----|-------|------|-----|------|------|------|------|------|
| Т    | ᆫ  | 71    | ==   | 매우  | 비교적  | ᄎᄑ   | 비교적  | 매우   | 포금   |
|      | 전체 | 100.0 | 34.1 | 2.8 | 31.3 | 41.4 | 28.7 | 12.6 | 24.7 |
| 2009 | 여성 | 100.0 | 32.2 | 2.2 | 30.0 | 40.1 | 28.0 | 12.1 | 27.7 |
|      | 남성 | 100.0 | 36.0 | 3.4 | 32.6 | 42.6 | 29.5 | 13.1 | 21.5 |
|      | 전체 | 100.0 | 32.1 | 2.5 | 29.6 | 51.3 | 38.1 | 13.2 | 16.7 |
| 2011 | 여성 | 100.0 | 29.8 | 1.3 | 28.5 | 50.9 | 39.5 | 11.4 | 19.2 |
|      | 남성 | 100.0 | 34.3 | 3.7 | 30.6 | 51.7 | 36.7 | 15.0 | 14.0 |
|      | 전체 | 100.0 | 33.7 | 3.3 | 30.3 | 50.2 | 36.8 | 13.3 | 16.3 |
| 2013 | 여성 | 100.0 | 30.1 | 2.5 | 27.6 | 49.7 | 37.0 | 12.7 | 20.2 |
|      | 남성 | 100.0 | 37.2 | 4.1 | 33.1 | 50.6 | 36.7 | 13.9 | 12.2 |
|      | 전체 | 100.0 | 26.3 | 2.1 | 24.2 | 54.3 | 38.7 | 15.5 | 19.5 |
| 2015 | 여성 | 100.0 | 24.9 | 1.4 | 23.5 | 53.0 | 37.7 | 15.3 | 22.2 |
|      | 남성 | 100.0 | 27.6 | 2.8 | 24.8 | 55.5 | 39.7 | 15.8 | 16.8 |

#### 강원남성의 다음세대 계층이동 상승 가능성, 강원여성보다 낮아져

최근 2015년에 이르러 강원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음세대 계층이동 상승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대폭 하 락했고, 여성에 비해서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시계열 자료를 통해 다음세대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 능성에 대한 성별 차이를 보면, 높음(매우 높다+높은 편이다)이라는 긍정적 인식이 강원여성의 경우 2009 년 42.4%에서 2015년에 38.1%로 줄어들었고, 강원남성은 44.1%에서 2015년 36.0%로 대폭 감소하였음.





주: '매우 높다'와 '비교적 높다' 응답 비율임.

#### 성별 계층의식 및 사회이동에 대한 정책적 고려 필요

강원여성 1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7명이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을 만큼 계층의 식이 낮고, 전국여성, 전국남성, 강원남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상층과 하층의 비율이 양극단에서 높은 양상을 보임, 낮은 계층의식은 사회적 자원과 보상에의 접근 및 할당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를 일면 드러낸 것이 며, 사회이동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도 영향을 미쳐 성취에 대한 동기부여를 약화시킬 수 있음. 강원여성의 계층 의식이 상층과 하층이라는 양극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은 타 집단에 비해 여성 집단 내 사회 경제적 지위에서의 이질성과 격차가 큼을 의미하며, 이는 가치관 및 태도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적 행위에서도 선택차이가 클 개연성이 높음. 따라서 정책결정에 대한 합의 및 연대에 사회적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

본인 및 다음세대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은 강원여성과 남성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주목할 점은 개인의 노력으로 본인세대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여전히 성별 격차 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임. 최근 2015년에 이르러 성차가 좁혀지고 있지만 강원여성이 인식하는 사회경제적 지 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남성과 격차를 보이면서 감소추세에 있음. 이는 현 사회적 구조 및 환경에서 강원여성 이 느끼는 계층상승의 사다리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현실인식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음.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자원 배분에 있어 세대 간 변화가능성을 보여주는 자식세대에 대한 기대감에서 최근 2015년에 강원남성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여성보다도 낮아졌다는 것임. 최근 어려워진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강원남성들이 느끼는 계층 의 고착화, 계층의 대물림에 대한 인식이 팽배해 졌음을 알 수 있음.

계층의식의 양극화, 사회이동에 대한 비관적 전망 등은 사회갈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저해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따라서 사회 불평등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안으로 여성의 계층상승 사다리 강화, 사 회적 공정성 확보가 뒤따라야 할 것임. 계층의식 차이 및 사회이동성과 관련된 요인들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 라 거주 지역이나 혼인상태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 문화적 자본 등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추후 면밀한 연구 가 필요함.

참고문헌 여유진 외(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혜경(1993). 한국인의 주관적 계층인식. 사회과학연구, 8:77~95.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GSIS), 사회조사

늦어지는 강원 여성의 출산

강원성인지통계 제75호 (201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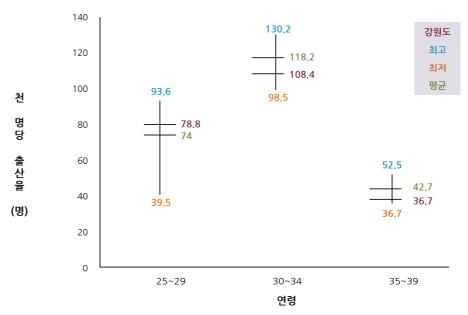
전국적으로 출산 연령이 증가하고 있음. 본 성인지 통계에서는 전국과 강원도를 비교하고 강원도의 연도 별 변화와 시·군의 출산 연령을 살펴보았음.

#### 전국적 출산 연령 증가 현상

가임기여성 중 가장 출산율이 높은 25세~39세 연령대의 출산을 비교해 보면 <그림 1>과 같음. 25~29세 에서 각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지역은 전남으로 인구 천 명당 93.6명이며, 서울이 39.5명 으로 가장 낮음. 강원도는 78.8명으로 전국평균인 74명과 유사함. 30~34세에서 강원도는 전국 평균보다 좀 더 낮은 108.4명을 보임, 35~39세의 출산에서는 강원도가 전국 최저인 36.7명으로 고령 출산이 전국에 비해 낮은 비율임을 알 수 있음. 전반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30대의 출산율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지만 강원도 역 시 같은 기류를 타고 있음.

#### 20대 출산의 감소, 30대 출산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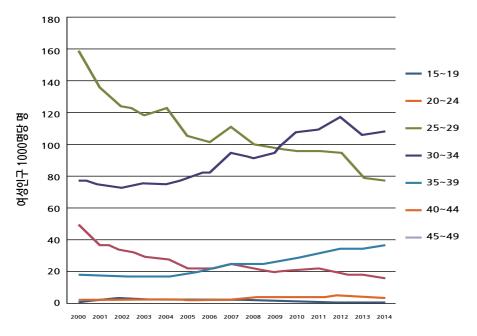
│그림1│2014 전국 평균·최저·최고 출산율과 강원도 출산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아래의 <그림 2>는 강원도에서도 연령별 출산율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년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를 살펴보면, 20~24세 여성 1,000명당 출산한 여성의 수가 49.9명에서 16.7명 으로 감소하였으며, 25~29세의 경우 159명에서 78.8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음. 반면 30대에서는 출 생아 수가 증가하였음. 30~34세가 79.4명에서 108.4명으로 증가하였고 35~39세가 18.9명에서 36.7명으 로 증가하였음. 40~44세의 고령 출산에서도 미세한 증가 폭이 관찰되었음.

| 그림2 | 2002~2014년 강원도 모母 연령별 출산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강원 도내 시 · 군별 출산 연령의 차이 발생

시·군별로 보았을 때는 평창군이 모 연령 가운데 20~24세의 출산이 12.55%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 을 보였고, 뒤이어 인제가 11.75%, 양구가 11.63%의 비율을 보였음. 25~29세 연령대에서는 화천이 40.07%, 양구가 38.65%, 인제가 38.21%를 보였음. 30~34세 구간에서는 삼척이 47.80%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 어 태백이 47.20%, 동해가 46.78%로 나타남. 35~39세 연령에서는 양양이 18.44%로 나타났으며 영월이 17.96%, 평창이 16.82%를 보였음.

결과를 종합해보면 강원도 접경지역에서 20대의 출산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은 같은 조사에서 초혼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고 합계 출산율이 높은 지역임. 전국 단위에서 수도권 과 비수도권의 연령별 출산율이 달랐던 것처럼 강원도 내에서도 거주 환경과 문화에 따라 시·군 차이가 있 음. 이러한 차이는 강원도에서는 접경지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관련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차이의 원인에 관 한 명확한 분석은 이 주제에 집중한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을 것임다.

│표1│2014 강원도 모의 연령별 출산 비율

| 비율  | 15~19세 | 20~24세 | 25~29세 | 30~34세 | 35~39세 | 40~44세 | 45~49세 | 합계    |
|-----|--------|--------|--------|--------|--------|--------|--------|-------|
| 강원도 | 0.81   | 6.75   | 31.85  | 43.82  | 14.83  | 1.90   | 0.04   | 100.0 |
| 춘천시 | 0.43   | 5.74   | 30.89  | 45.20  | 15.42  | 2.31   | 0.00   | 100.0 |
| 원주시 | 0.71   | 5.55   | 31.85  | 44.83  | 15.17  | 1.85   | 0.04   | 100.0 |
| 강릉시 | 1.20   | 6.35   | 29.61  | 44.07  | 16.73  | 1.99   | 0.05   | 100.0 |
| 동해시 | 0.78   | 6.39   | 30.93  | 46.78  | 13.60  | 1.40   | 0.11   | 100.0 |
| 태백시 | 0.57   | 4.57   | 30.86  | 47.20  | 13.71  | 3.09   | 0.00   | 100.0 |
| 속초시 | 1.65   | 5.80   | 33.81  | 44.39  | 13.24  | 1.12   | 0.00   | 100.0 |
| 삼척시 | 0.16   | 5.26   | 28.21  | 47.80  | 16.34  | 2.05   | 0.16   | 100.0 |
| 홍천군 | 0.98   | 9.84   | 34.93  | 41.14  | 11.51  | 1.60   | 0.00   | 100.0 |
| 횡성군 | 0.37   | 8.43   | 27.51  | 45.08  | 16.12  | 2.48   | 0.00   | 100.0 |
| 영월군 | 0.47   | 7.80   | 25.76  | 45.65  | 17.96  | 2.36   | 0.00   | 100.0 |
| 평창군 | 1.94   | 12.55  | 27.63  | 38.00  | 17.79  | 2.08   | 0.00   | 100.0 |
| 정선군 | 1.70   | 8.80   | 34.44  | 35.76  | 16.82  | 2.48   | 0.00   | 100.0 |
| 철원군 | 0.41   | 10.40  | 37.60  | 38.95  | 11.94  | 0.69   | 0.00   | 100.0 |
| 화천군 | 0.42   | 9.27   | 40.07  | 35.78  | 11.04  | 3.07   | 0.36   | 100.0 |
| 양구군 | 1.18   | 11.63  | 38.65  | 35.73  | 11.10  | 1.71   | 0.00   | 100.0 |
| 인제군 | 0.68   | 11.75  | 38.21  | 37.00  | 11.23  | 1.12   | 0.00   | 100.0 |
| 고성군 | 0.00   | 8.48   | 29.14  | 45.03  | 16.85  | 0.50   | 0.00   | 100.0 |
| 양양군 | 2.29   | 8.33   | 23.96  | 41.88  | 18.44  | 5.10   | 0.00   | 100.0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석 각 연령, 시·군별 비율 = 시·군 연령별 출산율\*100/시·군 전체출산율

## 강원성인지통계 발간 목록

부 록

| 발간월       | 호수   | 발간제목   |
|-----------|------|--|
| 2009. 11. | 제1호  | 우리노동시장의 현주소 : 여성고용률 OECD국가중 하위권                |
| 2009. 12. | 제2호  | 2008년 지역별 고용통계조사 결과 : 홍천여성, 인제남성 고용률 높아        |
| 2010. 1.  | 제3호  | 강원도 노령화지수 전국 4번째로 높아                           |
| 2010. 2.  | 제4호  | 맞벌이 부부 가사분담 실태 : 강원여성의 가사부담 높아                 |
| 2010. 3.  | 제5호  | 강원도 결혼이민자 비율 전국평균보다 높아                         |
| 2010. 4.  | 제6호  | 강원도 인구대비 장애인구 비율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아                  |
| 2010. 5.  | 제7호  |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아                  |
| 2010. 6.  | 제8호  | 강원도 광역여성의원 비율 전국 평균에 미달                        |
| 2010. 7.  | 제9호  | 전체 성범죄 발생건수 중 여성피해자 비율 99.5%                   |
| 2010. 8.  | 제10호 | 전국 청소년 인구비율 19.9% : 강원도 19.2%로 낮은편             |
| 2010. 9.  | 제11호 | 강원도 소재 대학 여성졸업자 취업비율 : 16개 시도중 두 번째로 낮아        |
| 2010. 10. | 제12호 | 2009년 강원도 노인 자살 사망률 :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아            |
| 2010. 11. | 제13호 | 강원도 여성의 자원봉사 및 후원참여                            |
| 2010. 12. | 제14호 | 2009년 강원도 여성의 독서량 낮아                           |
| 2011. 1.  | 제15호 | 2010년 건강검진율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
| 2011. 2.  | 제16호 | 강원도 소재 대졸자 여성취업률 전국 3번째 높아                     |
| 2011. 3.  | 제17호 | 여성들, 일하고 싶은 욕구 크지만, 육아부담 커                     |
| 2011. 4.  | 제18호 | 강원도 여성신문 구독율 남성과 차이 19.6% 차이                   |
| 2011. 5.  | 제19호 | 강원도 혼인건수 3.5% 증가했으나, 전국평균보다 낮아                 |
| 2011. 6.  | 제20호 | 기후 변화에 대한 불안감 강원도 여성 7번째                       |
| 2011. 7.  | 제21호 | 강원도 여성의 여가 만족도 전국평균보다 낮아                       |
| 2011. 8.  | 제22호 | 강원도 1인가구 비율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아                       |
| 2011. 9.  | 제23호 | 2011년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141개 과제 수행                    |
| 2011. 10. | 제24호 | 강원도,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변화 높아                         |
| 2011.11.  | 제25호 | 강원도 농가 여성비율 30-34세가 가장 낮아                      |
| 2011. 12. | 제26호 | 강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식도 낮아                           |
| 2012. 1.  | 제27호 | 강원도 흡연율 전국에서 가장 높아                             |
| 2012. 2.  | 제28호 | 여성의 대표성 제고'영역 성평등 지수,<br>16개 시ㆍ도 중 강원도는 9번째 수준 |
| 2012. 3.  | 제29호 | 출생아수 증감율: 강원도 16개 시ㆍ도중 3번째로 낮아                 |
| 2012. 4.  | 제30호 | 강원도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 16개시도 중 3번째로 높아              |
| 2012. 5.  | 제31호 | 근로여성, 30대부터 가정보다 '일을 우선'하는 비율 급격히 감소           |

| 발간월       | 호수   | 발간제목                                       |  |
|-----------|------|--|--|
| 2012. 6.  | 제32호 | 노인학대 신고 접수 지속적으로 증가,<br>강원도는 16개시도 중 10순위  |  |
| 2012. 7.  | 제33호 | 2010년 대비 2040년 인구증가율 추계:<br>강원도 5번째로 높은 수준 |  |
| 2012. 8.  | 제34호 | 강원도 여성의 자원봉사 실태                            |  |
| 2012. 9.  | 제35호 | 강원도 성별치매환자 실태                              |  |
| 2012. 10. | 제36호 | 전국빈곤율 반등 추세 절대적 빈곤율 강원도 시도 중 1순위           |  |
| 2012.11.  | 제37호 |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충북, 강원도는 7번째 수준       |  |
| 2012. 12. | 제38호 | 강원도 기부율 16개 시도 중 가장 낮아                     |  |
| 2013.1.   | 제39호 | 기후변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정도               |  |
| 2013. 2.  | 제40호 |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결과 나타난 성별차이                     |  |
| 2013. 3.  | 제41호 | 사회안전에 대한 성별 인식의 차이                         |  |
| 2013. 4.  | 제42호 | 남녀 결혼관의 차이                                 |  |
| 2013. 5.  | 제43호 | 성별 여가생활 비교 및 강원여성의 여가생활                    |  |
| 2013. 6.  | 제44호 | 강원도 고등학생 학업중단 현황과 지원방안                     |  |
| 2013. 7.  | 제45호 | 강원도 조손가족 현황                                |  |
| 2013. 8.  | 제46호 | 성별로 본 강원도민의 건강관리방법                         |  |
| 2013. 9.  | 제47호 | 사망원인의 성별 차이                                |  |
| 2013. 10. | 제48호 | 비정규직 여성노동현황                                |  |
| 2013. 11. | 제49호 | 강원도 여성교원 현황, 여교사 과잉이 문제인가?                 |  |
| 2013. 12. | 제50호 | 한부모가구 성별 실태 및 정책 지원                        |  |
| 2014.1.   | 제51호 | 강원여성의 만혼현상                                 |  |
| 2014. 2.  | 제52호 | 성별로 본 교통사고 원인과 현황                          |  |
| 2014. 3.  | 제53호 | 10년째 제자리… 여성경제활동                           |  |
| 2014. 4.  | 제54호 | 성별소비생활 불만족도 차이                             |  |
| 2014. 5.  | 제55호 | 생활시간의 성별 차이                                |  |
| 2014. 6.  | 제56호 | 6 · 4지방선거 여성대표성 저조                         |  |
| 2014. 7   | 제57호 | 일-가정 양립 위한 보육시설 현황과 개선과제                   |  |
| 2014. 8.  | 제58호 | 강원도의 성별인구 현황과 변화추이                         |  |
| 2014. 9   | 제59호 | 가족관계 만족도의 성별차이                             |  |
| 2014. 10. | 제60호 | 성별로 본 노후준비 실태                              |  |
| 2014.11.  | 제61호 | 강원도 외국인 이주자의 사회적 관계망 현황과 성별차이              |  |
| 2014. 12. | 제62호 | 성별 근로여건 만족실태                               |  |
| 2015. 1.  | 제63호 | 고용형태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                           |  |
| 2015. 2.  | 제64호 | 통근 · 통학인구의 성별차이                            |  |

91

| 발간월       | 호수   | 발간제목  |  |
|-----------|------|---|--|
| 2015. 3.  | 제65호 | 강원도 혼인율 전국 최저, 혼인율 증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대책 마련 필요         |  |
| 2015. 4.  | 제66호 |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결과, 강원도 여성조합장 "0"명                      |  |
| 2015. 5.  | 제67호 | 귀농 · 귀촌 인구 성별 차이                                  |  |
| 2015. 6.  | 제68호 | 강원지역 성별 자살 현황 및 특성                                |  |
| 2015. 7.  | 제69호 | 식품안전에 대한 성별인식차이                                   |  |
| 2015. 8.  | 제70호 | 강원도 건강과 의료 서비스 이용의 성별차이                           |  |
| 2015. 9.  | 제71호 | 20-44세 연령대 도외 인구유출 여성이 남성의 두 배                    |  |
| 2015. 10. | 제72호 | 강원도 교육 기대와 미충족의 성별차이                              |  |
| 2015. 11. | 제73호 | 강원도 고위직 여성공무원 증가 필요                               |  |
| 2015. 12. | 제74호 | 성인지 통계로 본 강원도 베이비붐 세대 여성의 실태                      |  |
| 2016. 1.  | 제75호 | 늦어지는 강원 여성의 출산                                    |  |
| 2016. 2.  | 제76호 | 강원남여의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과 행동차이                           |  |
| 2016. 3.  | 제77호 | 고용보험 상실사유의 성별차이                                   |  |
| 2016. 4.  | 제78호 | 혼자 사는 노인치매환자는 누가?                                 |  |
| 2016. 5.  | 제79호 | 강원도 여성가구주와 주택                                     |  |
| 2016. 6.  | 제80호 | 강원도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임금실태                              |  |
| 2016. 7.  | 제81호 | 고령화, 돌봄노동, 그리고 여성                                 |  |
| 2016. 8.  | 제82호 | 강원지역 대학 전임교수와 시간강사 비율의 성차                         |  |
| 2016. 9.  | 제83호 | 주관적 계층의식 및 사회이동의 성별 인식 차이                         |  |
| 2016. 10. | 제84호 | 강원도 정부위원회 여성위원비율 전국평균보다 낮아                        |  |
| 2016. 11. | 제85호 | 강원도 인구와 여성가구 변화:2015년 인구총조사본 10년                  |  |
| 2016. 12. | 제86호 | 생활시간조사에 나타난 강원도 남녀차이:<br>남성은 노동시간이 여성은 가사노동시간이 늘어 |  |
| 2017. 1.  | 제87호 | 성별, 결혼지위 차이에 따른 강원도 출산지원정책 수요                     |  |
| 2017. 2.  | 제88호 | 강원도 성별 장시간 노동 비율과 여성 업무경쟁력 평가                     |  |
| 2017. 3.  | 제89호 | 강원도 미취학자녀 양육참여에 대한 성별차이                           |  |
| 2017. 4.  | 제90호 | 강원도 2030세대의 가족 내 성역할 변화와 지속                       |  |
| 2017. 5.  | 제91호 | 강원도 성평등 지수 높은 편? 이면의 불안한 현실                       |  |
| 2017. 6.  | 제92호 | 강원도 저임금 일자리와 여성                                   |  |
| 2017. 7.  | 제93호 | 강원도 임금근로자의 성별 소득분포 차이                             |  |
| 2017. 8.  | 제94호 | 강원도 경력단절여성의 규모와 실태                                |  |
| 2017. 9.  | 제95호 | 강원도 여성장애인 증가와 성별 취업격차                             |  |
| 2017. 10. | 제96호 | 강원도 여성의원 비율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  |
| 2017. 11. | 제97호 | 강원도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 실태                               |  |

| 발간월       | 호수     | 발간제목                             |
|-----------|--------|----------------------------------|
| 2017. 12. | 제98호   | 부성권의 현실                          |
| 2018. 1.  | 제99호   | 강원도 미혼 청년층의 일 ㆍ 생활균형             |
| 2018. 2.  | 제100호  | 강원도 2030 남녀의 성역할 인식              |
| 2018. 3.  | 제101호  | 혼전동거 및 혼전출산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보수적     |
| 2018. 4.  | 제102호  | 강원도 청년층의 부모자녀 간 경제적지원에 대한 성별의식차이 |
| 2018. 5.  | 제103호  | 강원도 1인가구의 성별, 연령별 특성             |
| 2018. 6.  | 제104호  | 지방선거 당선자 성별 현황과 강원 여성의 정치참여      |
| 2018. 7.  | 제105호  | 강원도 청년의 일 · 결혼 · 출산 경로의 성별 차이    |
| 2018. 8.  | 제106호  | 강원도 미혼청년, 다양한 가족 형태에 허용적         |
| 2018. 9.  | 제107호  | 공평한 가사분담, 견해와 현실의 차이             |
| 2018. 10. | 제108호  | 강원도 인적자원개발 교육 참여현황과 성별 특성        |
| 2018. 11. | 제109호  | 강원도 워킹맘&워킹대디의 일·가정 갈등경험          |
| 2018. 12. | 제110호  | 청년 거주지 마련을 위한 부모 지원의 성별차이        |
| 2019. 1.  | 제111호  | 강원도 노인 이동권과 성별차이                 |
| 2019. 2.  | 제112호  | 강원도 출산 · 육아 지원제도 활용의 성별 차이       |
| 2019. 3.  | 제113호  | 강원도 여성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
| 2019. 4.  | 제114호  | 강원도 여성 비정규직 규모와 특성               |
| 2019. 5.  | 제115호  | 강원도 장애인의 성별취업 특성                 |
| 2019. 6.  | 제116호  | 강원도 경력단절여성의 현황과 특성               |
| 2019. 7.  | 제117호  | 강원도는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인가               |
| 2019. 8.  | 제118호  | 강원도고용보험가입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성별차이    |
| 2019. 9.  | 제119호  | 강원도 한부모가구의 성별 주거실태               |
| 2019. 10. | 제120호  | 자연재해 위험의 성별 격차, 대응과 예방           |
| 2019. 11. | 제121호  | 강원도 돌봄일자리 = 여성일자리 = 저임금일자리?!     |
| 2019. 12. | 제122호  | 강원도 장애인 학대 피해 경험의 성별 차이          |
| 2020. 1.  | 제123호  | 강원도 여성공무원의 현황과 경력관리              |
| 2020. 2.  | 제124호  | 강원도 노인의 경제 현실과 성별 특성             |
| 2020. 3.  | 제125호  | 강원도 성별 임금격차, 어디까지 왔나             |
| 2020. 4.  | 제 126호 | 젠더 관점에서 본 감염병 재난상황과 대응과제         |

# **4**數. 수遂.한 010171

숫자로 완성한 강원도 여성의 삶 10년

**발행인** 박기남

**발행일** 2020.05.

**발행처**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주소: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25(석사동)

전화: 033)248-6300

팩스: 033)248-6305

http://gwfri.gwd.go.kr

인쇄처 불개미커뮤니케이션 (033-252-0098)